

또한 재사회화 행형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결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sup>92)</sup>이었다.

따라서 누진처우제도는 그것의 효율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치주의원칙 및 사회국가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그리고 자의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누진처우제도는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 하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행행완화조치와 보안목적 간의 충돌과 그 해결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보안이라는 두가지 목적은 서로 조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처우조치는 수형자의 자유활동영역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남용의 위험성을 수반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사회화행형이 폐쇄적 고립화를 지양하고 개방행형 내지 행행의 사회화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러한 모순적 관계는 점에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의 직업훈련이나 외부통근제도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중요하고 또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이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외부사회와의 접촉기회가 증대할수록 범죄행위나 도주의 위험성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보전 혹은 사회방위의 시각에서 보면 제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독일 행행법은 귀휴 및 행행완화조치의 경우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거나 행행완화를 범죄행위에 남용할 우려가 없는 때”에 비로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3)</sup> 전자는 “도주의 위험성”으로 형집행목적을, 후자는 “남용의 위험성”으로 보안목적을 반영한다. 즉 개방행형이나 행행완화 등과 같은 사회화 처우는 형집행목적과 보안목적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독일 행행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사회화목적의 우위성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sup>94)</sup> 그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때에는 재사회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행행완화조치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95)</sup> 그 때 행행완화조치의 재사회화 이익과 우려되는 범죄의 정도 간에 이의형량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예컨대 모욕과 같은 언어적 범죄행위의 위험을 이유로 행행완화조치를 거절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sup>96)</sup>

그러나 모든 사소한 범죄의 위험성을 다 포함하여 재사회화처우조치의 제한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처우행형이 아니라 엄격한 보안을 제일의 과제로 하는 행행체계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사회화처우를 위해서는 그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보안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sup>97)</sup> 그 방법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사회화처우조치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개별적인 사례에서 비교형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행법은 그러한 비교형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sup>98)</sup>

이와 같은 기준에서 현행법상 대표적으로 외부사회와의 비교적 자유로운 접촉을 허용하는 조치인 귀휴를 보면, 그러한 심사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커다란 의문이다. 현행법은 단지 귀휴시행규칙 상에 심사대상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sup>99)</sup> 행행법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행행완화조치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휴의 허가가 당해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판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도주나 남용의 위험성은 없는가를 비교형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대상을 재구성해야 한다.

92) 예컨대, Schüler-Springorum, Strafvollzug im Übergang, 1969, S.232ff. ; Wörtenberger, NJW 1969, S.1750.

93) 독일 행행법 제10조 1항(개방행형으로의 이송의 경우), 제11조 2항(행행완화조치), 제13조 1항(귀휴의 경우) 참조.

94) Schwind / Böhm, StVollzG, §2 Rn.8f., 18, §11 Rn.14.

95) OLG Karlsruhe, ZfStrVo 1979, S.54.

96) BVerfG NStZ 1982, S.83.

97) Schwind / Böhm, StVollzG, §2 Rn.8 ; Böhm,

98) Schwind / Böhm, StVollzG, §11 Rn.14 ; AK-Hoffmann / Lesting, StVollzG, §11

Rn.42.

99) 행행법 제44조 2항 및 귀휴시행규칙 제2조 내지 8조 참조.

## V. 맷 음 말

“수형자는 일반시민과 똑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이다. 수형자의 자유와 권리는 행형목적의 근거에서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만 불가피한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된 것은 서구의 경우에도 불과 20년을 넘지 않는다. 특별권력관계이론 때문이다.

우리의 행형법과 행형현실은 어떠한가? 행형법은 일찌기 “법률”의 형식을 띠고 처우 행형을 표방하였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교도소의 직무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수형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없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형법정주의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행 행형법 자체는 형식부터 다분히 위헌법률이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특별권력관계이론뿐일 것이다.

따라서 행형법은 행형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형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전면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이글은 그것의 이론적 기반으로 최근의 수정된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법치주의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이라 부르고 싶다. 그것은 특별권력관계가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형자와 국가의 관계가 지니는 “특수성”이 법치주의에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불확정개념이나 재량규정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용인되어야 하는 반면에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는 더욱 강화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행형법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형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법치주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글은 행형목적으로는 재사회화, 그러나 치료적 처우가 아닌 수형자의 주체성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회제공형”的 재사회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재사회화행형은 수형자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결코 재사회화목적의 포기가 아니라, 재사회화행형이념을 헌법적 가치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올바르게 위치지우는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이글이 수형자의 법적 지위를 위한 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실제 행형현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수형자의 권리주체성, 인격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헌적, 위법적 행형조치에 대한 과감한 대항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서구 행형의 역사에서 수형자의 인권보장은 재소자소송의 끊임없는 제기 속에서 비로소 관철될 수 있었음을 보아도 분명해진다. 교도소는 보통 인권의 사각지대로 표현된다. 그만큼 수형자의 지위는 취약하며 다른 사회부문에 비하여 발전이 늦다. 사회전반의 관심과 구체적 협력이 어느 부문보다 절실한 것이다.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A Study on Scandinavian Criminal Policy and Penal Practice)

한인섭(韓寅燮,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교수)

## 1. 서 론

## (1) 문제의 제기

(2) 지역연구의 단위로서의 북구

(3) 본고의 범위

## 2. 범죄와 형벌의 수준 및 변화방향

(1) 범죄의 증가와 패턴변화

(2) 형벌수준과 변화의 추이

## 3. 형벌 및 행성이론상의 새로운 경향

(1) 의료모델, 강제적 처우에 대한 비판

(2) 신고전주의의 북구적 전개

(3) 폐지론적 전망

## 4. 형사재재 분야의 개선을 위한 노력

(1) 형법개정과 형사재재

(2) 자유형의 감소론과 변형된 자유형

(3) 자유형에 대한 대안 : 벌금, 사회봉사명령 기타

(4) 혁신적 대안의 실험 : 계약처우제와 분쟁조정제도

## 5. 범죄피해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 6. 북구의 교정정책에 대한 검토

(1) 감옥개혁운동의 전개와 성과

(2) 정책적, 법적 보장

(3) 스웨덴의 모델감옥 : 그 특성

(4)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 7. 결 론

## (1) 문제의 제기

본고는 북구(Nordic Countries, 혹은 Scandinavian Countries)의 형사정책의 지향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구 각국은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조화시킨 하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구는 그밖의 나라들로부터 선진적인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미국형 자본주의와 (구) 소련형 사회주의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조화시키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오고 있는 시점에서, 제 3의 노선의 하나로서의 북구적 노선(Scandinavian Route)은 새로이 주목을 더하고 있다. 북구노선이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만능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은 물론 아님지만, 비교적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결코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적은 사회정책의 일부로서의 형사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당된다. 형사정책에 있어서 효율성과 인도성, 다시 말해 과학과 인권의 조화는 지도적 이념으로 부상한지 오래지만, 그러한 이념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려는 진지한 정책적 노력은 훨씬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구의 경우는 다양한 실험과 제도화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그 이념에 보다 접근해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기에 형사정책 분야에서 북구 각국의 비중은 그 나라들의 크기에 비해 훨씬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개별 국가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북구는 인도주의적인 형사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구의 가장 가치있는 기여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Sveri, 1990 : 27).

연구대상으로 북구의 형사정책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형사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일정한 문제의식을 함유하고 있다. 두 상이한 사회의 밝은 부분만을 비교한다면 북구와 우리의 경우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우리가 앞선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하지만 비교대상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와 비난받는 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로 설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낙후된 면이 절감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정책이 그 사회의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를 주로 다루는 정책분야라 한다면, 거기에는 그 사회의 갈등해결방식과 '문제인구'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종래의 형사정책은 억압적 형벌관과 권위주의적인 법집행, 그리고 문제인구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에 의해 특징지워질 수 있다. 범죄자는 나쁜 짓을 한 우리의 이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적'으로 인식된다. 문

제가 생기면 형벌강화와 법질서 확립의 과제가 소리높여 외쳐진다. 범죄자는 폐쇄된 시설속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죄값으로 달게 받고, 사회는 그 속에 사는 인간들에 대해 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정책의 요청은 단단한 수형시설의 철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종종 장식물로 기능할 따름이다. 수형자의 권리, 출소자의 권리가 논의되기는 하나, 행정실무가와 일반 대중에게 있어 이러한 권리주장은 분수를 모르는 주제넘은 주장으로 들리기 쉽다. 범죄자를 비롯한 문제인구에 대해 무관심과 불관용을 통해 전체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여태까지의 형사정책의 기조는 종종 군사주의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어 왔다고 판단된다. 1990년에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은 그 한 최근의 예에 불과하다. 범죄와 관련된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는 그 참여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가해자는 비난받고, 피해자는 잊혀진 위에 공익의 대변자들의 목소리만 높이 전달된다. 거개의 정책방침들이 위에서 아래로 시달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의견과 협력은 명목적인 데 불과한 실정이다. 많은 결정들이 정책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정권이 군사정권에서 유사 군사정권으로, 다시 문민정부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도 형사정책 분야에 있어서 민주화와 사회화의 흐름은 아직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문민정부로의 변화는 '소수의 전제'에서 '다수의 전제'로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권력행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달리 말해 교도소의 수용인구의 신분과 직위는 달라질지 몰라도, 그 교도소의 구조와 성격은 여전한 것이다. 어느 사회나 교도소는 그 사회와 국가의 한 거울이라 할 때(한인섭, 1989 : 5), 그 거울을 통해 들여다본 우리 사회와 국가의 모습은 여전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끝에 얻어진 성과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제도적 민주화의 바탕을 형성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 국가 관료제와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지도자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규모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사회적 민주주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참여민주주의의 틀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다가온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동맥경화 상태에 있던 '한국병'을 치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신체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일상생활속에 작용하는 생활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장래의 한국사회의 바람직한상을 이렇게 결정지을 때, 형사정책분야에서도 전쟁보다는 평화, 강제보다는 자율, 배제보다는 참여, 국가권력보다는 지역 공동체, 권력집중보다는 분산과 가치 등에 바탕을 둔 대안들이 진지

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구의 경우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후자쪽의 개념들이 널리 쓰이고 또한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구의 형사정책의 검토는 한편으로 그와의 대비를 통해 기존의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일깨우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한 가치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 (2) 지역연구의 단위로서의 북구

보통 북구(Nordic countries) 혹은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라 할 때, 북으로는 북극해,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서쪽으로는 북해, 남동쪽으로는 발틱해에 둘러싸인 지리적 영역을 말한다. 북구에 속하는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및 아이슬란드 등이 있으며, 그밖에 덴마크의 군도들과 Faeroes 등이 포함된다. 영토는 넓은 반면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스웨덴이 830여만으로 가장 많고, 덴마크가 510만, 핀란드가 480만, 노르웨이가 410만 정도를 헤아리며, 아이슬란드는 27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구의 개념은 단순히 지리적인 데서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북구를 결속시키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인 일체감에 기인한다. 종교적으로 볼 때 북구 각 국은 비슷한 시기에 카톨릭으로부터 루터교로 개종했으며, 사회구조와 법제도 역시 여러 세기에 걸쳐 유사한 변모를 보여왔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언어는 매우 비슷하며, 핀란드인들도 스웨덴어를 모어(母語)로 하고 있거나 스웨덴어를 해득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는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몇 세기동안 각각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북구는 주변 강대국인 영국과 독일, 홀란드 등에 흡수되지 않고 정치적, 문화적인 독자성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Wendt, 1981 : 654).

북구 상호간에 분쟁과 갈등이 잇달았음은 다른 모든 인접국간의 경우와 별반 다름이 없다. 19세기 이후 근대적 민족주의의 물결 속에 북구는 오늘날의 국가들로 재편성되었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정립과 함께 범 스칸디나비아주의(Pan-Scandinavianism)이라 불리우는 사상과 운동이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일상생활의 분야에서 각국 시민들이 협력을 추구하고 공통이익과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북구협력(Nordic cooperation)의 관념은 대단히 자연스런 사고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구협력사상은 공교육의 확충과 더불어 더욱 깊어졌고, 노동운동의 성장에 의해 더욱 고취되었다. 노동운동조직은 협의의 국경개념을 넘어선 연대를 추구하게 되었고, 상호 지원은 매우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나아가 모든 전국규모의 조직체와 기관에 파급되어, 오늘날 어떤

한 국가의 전국조직은 다른 북구 국가의 유사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본다.

수많은 조직간, 단체간, 기관간의 유대망은 정부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밀거름이 되었다. 의회적 차원에서는 북구위원회(Nordic Council)가 1953년부터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부 차원에서는 각료위원회(Council of Ministers)가 1971년부터 구성되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피하고 있다(상세는 Wendt, 1981 : 657 이하 참조.). 인접국가들과 이렇게 국민적, 정부적 차원에서 밀접하게 협력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국제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높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형사문제와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북구 각국의 협력 역시 대단히 긴밀하다. 각국의 협력형태로는 범죄자인도, 사법적 지원, 형사절차의 이송, 형벌시행에서의 상호존중과 협력 등이 포함된다(Lahti, 1990 : 94). 형법과 형사정책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통된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각국 형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 북구각국의 협력은 주목할 만하다. 1960년에 형법개정작업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북구형법위원회(Nordic Criminal Law Commission)가 결성되었다. 1980년대에만 해도 이 위원회는 각종 보고서를 간행했는데, 그 중에서 자유형에 대한 대안, 양형의 합리화, 범인의 형사책임규정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북구각국의 범죄학자와 실무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구로서는 스칸디나비아 범죄학연구위원회(Scandinavian research Council for Criminology)가 있다. 이 위원회는 북구각국의 범죄학 연구를 촉진하고, 정부당국에 형사정책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각국의 학계 대표와 법무부에 의해 임명된 13인의 위원<sup>1)</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3년에 한번씩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정해진다. 이 위원회의 주도하에 각종 현안에 대한 세미나와 연구 프로젝트 및 출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북구 각국의 연대감은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뿐 아니라 민간적 차원 혹은 사회운동적 차원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이같은 북구각국의 연대감과 조화는, 각국 입법과 법현실상의 상당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

1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가 각 3인씩,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1인으로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각국의 GNP 수준에 맞추어 분배된다.

2 출판물로는, 뉴스레터 형식의 *Nordisk Kriminologie*가 나오고 있으며 영어로 간행된 주요 단행본으로는 N. Bishop ed.(1980), *Crime and Crime Control in Scandinavia 1976-1980* ; N. Bishop ed.(1985), *Scandinavian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1980-1985* ; P. Stangeland (1986), *Drugs and Drug Control,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8 ; F. Balbig (1988), *The Snow-White Image,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 9 등이 있다.

나의 지역단위의 연구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 (3) 본고의 범위

본고는 우리의 문제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북구의 형사정책 가운데 특히 형벌과 행형분야에서의 진전된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구의 범죄와 형벌의 단기적, 장기적 패턴을 서술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범죄, 형벌의 패턴을 바탕에 깔고, 60년대 이후 북구 형사정책 이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정책의 추구는 크게 두 가지 조류로써 나타나는데, 보다 전통적인 신고전주의와 보다 급진적인 형벌폐기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조류들은 바로 형법개정과 형사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형사제재분야에서는 특히 자유형의 감소론과 자유형에 대한 대안의 추구가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대안의 방향은 당사자의 의사를 강조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형사정책 분야에서 북구적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행형, 교정정책이다. 70년대 이래 북구에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 개혁이 어울리면서, 수형자의 개별적,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고 가장 선진적인 처우 수준을 보장하기에 이른다.

이같이 북구는 근대 형벌의 중심을 차지하는 자유형의 감소와 대안의 추구, 인도적인 행형실험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북구의 언어로 쓰여진 자료를 직접 취급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로 영어와 독일어로 쓰여진 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한계는 지역 연구에 치명적일수도 있지만, 북구의 학자들이 자신의 주요한 분석을 다른 언어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와 같은 입문적인 분석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북구의 모든 나라를 균형있게 취급하기 어려워, 그 중에 몇몇 국가를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자료들이 많이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로서의 평판과 북구 내에서의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한 결과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북구 각국간에 차이점이 많겠지만, 멀리서 형사정책의 일반적 특색을 축출하는 데는 이런 방법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 2. 범죄와 형벌의 수준 및 변화방향

### (1) 범죄의 증가와 패턴 변화

<도표 1>에서 보여지듯이, 북구 각국의 범죄는 1950년대 이래 증가일로에 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합쳐 1550년에 총 350,000건의 형법범죄(인구 100,000명당 약 2,800건의 범죄)가 신고되었던 것이 1981년에는 1500만 건의 형법범죄(인구 100,000명당 9,800건의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실질적인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최근 범죄암수율을 밝혀내려는 연구들도, 이러한 증가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함을 지지하고 있다. 증가현상이 모든 북구 국가들에게 공통된 특성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60년과 1981년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인구 100,000명당 형법범(14세 이상)은 덴마크에서 2.84배, 노르웨이에서 2.86배, 핀란드에서 2.84배, 그리고 스웨덴에서 2.52배의 증가를 보인다. 스웨덴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나, 비교의 전시기인 1950년대에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Balbig, 1985 : 8).

나라별로 유의미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범죄율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상대적으로 높고, 핀란드가 낮은 편이며, 노르웨이가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범죄암수율의 성과를 같이 놓고 보면 실제통계만큼의 대단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도표 2>는 주요범죄의 변화를 보여준다. 살인율은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낮은 편이다. 모든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증가를 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절도범의 증가이다. 비재산범에 해당하는 폭력범과 강간범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범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 폭력범죄는 알콜의 소비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Hofer, 1991: 6), 알콜리즘을 감소시키려는 사회적 캠페인은 폭력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알콜소비량은 안정추세인 반면, 폭력범은 다시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알콜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70년대 이후 약물범죄 교통범죄의 증가가 보여지고 있다.

범죄추이의 변화의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차량보유대수의 변화, 알콜소비량의 변화 같은 것에서부터 사회내 실업률, 외국이민의 증가, 도시화의 추세, 소비자사회로의 전환 등 보다 거시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 강조되는 원인요

소도 다른 것 같다. 대체로 노르웨이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를 강조한다. 스웨덴에서는 수송수단 및 물질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범죄기회의 증가를 강조한다. 덴마크에서는 사회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들에 의한 범죄의 상습화, 누범화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Balbig, 1985 : 12). 모든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수의 증가, 세대간 격차와 정체감의 상실 등이 일탈적 반응이라는 집단적 해결책을 추구하게끔 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범죄억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도덕관념 기타 내면화된 규범통제가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도 유의되고 있다.<sup>3)</sup>

범죄패턴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스웨덴에서는 신고된 범죄에 관한 통계가 도입된 1950년대 이래 범죄의 증가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1950년에 160,000건의 형법범이 신고되었다. 1988년에는 총 955,000건으로 거의 6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형법 범 역시 동기간에 34,000건에서 131,000건으로 늘어났다.

범죄의 수(신고된 범죄를 기준)에서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학적인 변수로 설명될 수 없다. 이 기간동안 인구는 650만에서 850만으로 1.4배 이내로 늘어난 정도이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실제적인 범죄증가율은 4배에 달하고 있다.

물론 모든 범죄가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1950년과 1988년을 대비할 때 지난 30년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NCCP, 1990 : 12).

- 형법범은 1950년에 160,000건에서 1988년에 955,000건으로 약 500% 늘어났다.
- 폭력범은 13,000건에서 79,000건으로 5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절도범은 110,000건에서 646,000건으로 49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사기범은 13,000건에서 102,000건으로 약 68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재물손괴범은 5,000건에서 86,000건으로 약 1620%의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동기간동안 신종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마약사범은 1950년 통계에는 보이지 않으나 88년에는 29,000건이 보고되고 있다.

<도표 3>은 1988년의 스웨덴의 범죄별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압도적인 비율은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절도죄가 차지하고 있다. 1988년에 절도범은 총 646,000

3 Joutsen (1992), 12-13면. 청소년의 역할을 살펴봄에 있어 인구학적 변화와 범죄변화를 관련시키려는 연구도 있다. 총인구수에 비해 전체 범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일탈적일 수 있는 연령층(가령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인구와 해당연도의 범죄량을 비교해본다면 그 증가는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건으로 총범죄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절도범(larceny)에는 협의의 절도(theft), 주거침입절도(burglary) 및 차량절도가 포함된다. 협의의 절도 가운데 자동차절도가 149,000건이며, 상점에서의 들치기가 59,000건을 차지한다. 차량절도 가운데 자전거는 84,000건, 자동차는 60,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재산범죄의 상당부분이 차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 및 자전거가 절도와 손괴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절도 등 차량관련 재산범죄는 전체 재산범죄의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Dolmen, 1990 : 13).

1950년대 이래 전체 범죄율은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물론 이러한 공식범죄통계가 실제 범죄의 변동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복구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일반적 추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해보면 범죄패턴의 변화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범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유형, 즉 절도범과 폭력범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양자간의 비중이 역전되어온 것을 잘 보여준다. <도표 4>에서 잘 보여지듯이,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폭력범의 상대적 축소와 절도범의 상대적 증대로 특징지워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절도범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하락하다 그 뒤 안정국면을 보인다. 1차 대전 중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전후에는 곧 전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일관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폭력범은 1850년대부터 1925년 정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뒤 상대적 안정국면이 지속되다, 60년대 초부터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에 폭력범으로 처벌받은자의 수는 19세기 중반에 처벌받은 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양자의 관계는 더욱 유의미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폭력범의 수는 절도범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 반해, 20세기 후반에는 절도범이 폭력범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경향은 각국의 범죄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대체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폭력범의 상대적 비중이 약화되고, 재산범의 상대적 증가가 보여진다. 그리고 절도범의 경우, 산업화의 초기에는 절대적 빈곤의 감소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면 절도범, 사기범 등 비폭력적 재산범의 비중이 폭력범을 월씬 압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서의 폭력범의 감소에는 다음 두가지가 특히 지적된다. 첫째는 알콜단속정책과 아울러 금주운동의 성공이 폭력의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19세기 후반 미국으로의 이민의 물결

로, 청장년층이 대폭 감소했다는 사실이다(NCCP, 1990 : 14).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범죄는 열악한 사회환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일종의 곤궁성범죄(hardship criminality)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진보주의자들은 물질적 빈곤과 열악한 사회환경을 개선하면 범죄는 사라져갈 것으로 확신했다. 당시의 범죄패턴을 살펴볼 때 그러한 확신은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이었다. 술주정, 매춘, 공공장소 및 공로상의 소란행위 등이 빈발했고, 음주와 빈곤과도 무관치 않은 각종 폭력이 가두에서 가정에서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영아살해도 19세기 후반까지 빈번히 나타났다. 이 시기의 절도는 단순한 물질적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생존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NCCP, 1990 : 28).

스웨덴의 경제적 발전과 복지수준의 향상은 이같은 '원초적' 수준의 범죄를 감소시켰다. 20세기 전반기의 범죄율의 감소가 이를 증명한다. 술주정, 매춘, 폭력범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고, 절도범도 보다 온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범죄는 증가일변도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이 때의 범죄증가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 수준의 범죄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하나의 설명은 일련의 사회변동이 범죄기회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서 구해질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나아가 대량소비사회로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동은 특히 재산범죄의 대상과 범행수단에 새로운 기회를 폭넓게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심각한 절도의 하나인 자동차절도를 살펴보자면, 1950년 당시 스웨덴의 자동차 수는 250,000대이며 그 중 매년 몇천대가 도난당했지만 1980년대 말에 이르면 자동차 수가 340만대에 달하고 그 중 62,000대의 도난사고가 생겨나고 있다. 자동차 절도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셀프서비스 판매의 증가는 상점절도의 가능성을 높인다. 상품의 가격표준화와 내구성의 증가는 장물(藏物)의 재판매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의 재산죄의 경우에도 기회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불수단, 가령 은행수표, 신용카드, 현금카드와 관련된 범죄들이 대폭 늘어나거나 새로 나타나게 되었다. 컴퓨터 범죄의 경우 완전히 최근의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기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언급할 것은 소유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많은 부(富)가 개인이 아닌 익명의 조직체 혹은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이런 형태의 부는 사인(私人)의 것보다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상점절도, 자동차절도,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기, 컴퓨터 범죄 등은 개인보다 기업과 관련될 때 더욱 용이하게 범죄대상이 되며, 실제로 기업부문의 범죄가 더욱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Joutsen, 1992 : 35).

범죄의 대상으로 뿐 아니라 범죄주체로서의 기업의 비중 또한 늘어가고 있다. 70년대 이래 경제범죄와 환경범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기업의 책임도 크게 거론되게 되었다. 소비자 및 환경감시자로서의 민간부문은 기업의 범죄를 부각시켜왔고,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촉진 시켜왔다.

이같이 범죄량의 증가는 늘어나는 범죄기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 소비자사회로의 전환은 범죄기회의 확대를 가져오는 한편으로 사회통제의 전통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전산업사회의 생활근거지는 농촌이며, 농촌사회는 가족 및 지역사회의 강한 내적 유대감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내적 유대는 도덕적 결속감과 비공식적 통제규범의 내면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이동이 낮은 것도 비공식적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오늘날의 상황은 물론 이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익명적인 삶을 살게 되며, 직업활동과 사적 삶은 분리된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세대간의 접촉은 단절되며, 동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 대립적인 가치관들이 상호 충돌하게 된다. 비공식적 통제는 국가에 의한 공식적 통제로 대치되고, 가족의 역할의 상당부분은 전문가에게 넘어간다. 경찰과 감옥, 통제적인 행정기구가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범죄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범죄자에게 손쉬운 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국경의 올타리도 별다른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범죄기회는 늘어난 반면, 통제의 곤란성은 더욱 커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들이 범죄증가를 가져온 장기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2) 형벌수준과 변화의 추이

북구 각국에서 사형은 더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사형을 폐지했다. 전시하의 사형도,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폐지되었고 스웨덴에서는 1974년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규정이 있던 경우에도 사형을 실시하지 않은지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이다. 평화시의 사형집행은 스웨덴에서는 1910년에 마지막으로 있었고 핀란드에서는 1826년이래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었다.

북구 각국에서 제재제도는 대체로 자유형과 벌금형을 일반형으로 하고, 조건부 자유형,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 그 변형 혹은 특수한 제재로써 규정되어 있다.<sup>4)</sup>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자면, 자유형은 최저 14일에서 최고 10

4) 덴마크에 대한 상세한 것은 Kalmthout(1988), 17-68면 ; Jepsen(1991), 99-160면, 스웨덴의 경우는 Kalmthout(1988), 258-302면 ; Bishop (1991), 599-632면

년 사이의 정기형을 원칙으로 하며, 가장 중한 형벌로 무기형이 있다.<sup>5)</sup> 경합범의 경우 12년까지, 특수한 누범의 경우 16년까지 형이加重될 수 있다. 3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고형의 절반을 경과하게 되면 가석방을 하게 되는 필요적 가석방제가 법률로써 채택되어 있다. 만약 형기가 2년이 상이고 그 범죄가 폭력범 혹은 마약사범인 경우에는 형기의 절반 혹은 2/3를 경과한 이후 가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건부 자유형(conditional sentence)이라 함은 2년간의 조건부로 형을 유예하는 형을 말한다. 유예기간동안 새로운 범죄를 행했다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건부 자유형의 한 유형으로, 최근에 범죄로부터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돋기 위한 근로봉사를 조건으로 부가하기도 한다.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자에 대해 사회내에서 감독, 관찰함을 말한다. 알콜이나 마약남용자의 경우 자유형을 과하지 않는 대신 특별한 형태의 보호관찰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선고할 수 있다. 소위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가 그것이다. 알콜 혹은 마약의 금절을 위해 입안된 당국의 프로그램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유형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북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스웨덴에서는 1990년에 사회봉사명령의 시험실시가 이루어졌다.

벌금은 스웨덴에서는 일수제(day-fine) 혹은 정액제로 행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일수제에 의거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 형사재판의 적용빈도를 살펴보자면 벌금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에 자유형이 차지하고 있다. 자유형을 완화한 성격을 띠고 있는 조건부 자유형 및 보호관찰 역시 상당한 비중을 점한다. 전체적인 분포도는 <도표 5>와 같이 보여진다.

스웨덴의 경우 구금율은 금세기 들어 상대적인 안정을 보이고 있다. 1900년에 인구 100,000명당 구금율은 60명 정도였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대차없이 유지되고 있다. 1일 평균 구금자수는 1981년에 4,800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는 1840년대 이래 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형벌이 매우 안정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의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구금율의 현저한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형시설의 수용인원이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은 결국 평균형기가 매우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Bondeson, 1989 : 298).

다른 북구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1981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1일 평균구금자수(미결수용자 포함)는 스웨덴이 58명, 노르웨이가 44명, 덴마크가 68명, 그리고 핀란드가 가장 높은 101명이다. 보다 의미있는 것은 구금자의 평균 구금일수인

## 참조

5) 무기형은 종신형과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며 장기 부정기형에 해당한다. 무기형은 사면이 있을 경우 12년 내지 16년의 정기형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

데, 스웨덴은 평균 3.5개월, 덴마크는 2개월, 노르웨이는 2.5개월, 핀란드는 5개월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 각국에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며,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평균형기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북구의 구금비율의 특성을 보다 잘 알 수 있다. <도표 6>의 인구 100,000명당 구금율을 보면, 북구 각국은 대략 6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원래부터 낮은 구금율로 유명한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100,000명당 미결수용자의 수에 있어서도 북구 각국은 20명 이내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도표 7> 참조). 총 구금자 가운데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핀란드(10.6%), 스웨덴(20.9%) 등은 매우 낮고, 덴마크(29.9%)는 다소 높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의 증가와 자유형의 비중의 축소는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대해 Christie는 형벌의 실질가치(penal value)의 변화로 설명한다(Christie, 1968). 돈의 가치가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받듯이, 사회변동 및 생활여건의 변동은 형벌의 실질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형벌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중의 하나인 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의 전환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19세기 초반 질병과 궁핍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생존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육체적 고통도 이전의 더한 고통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생명과 신체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그것에 고통을 과하는 형의 존립기반이 약화되는 것이다. 사형은 이전보다 훨씬 중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이는 사형의 감소로 귀결된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더많은 레저의 여유가 허락될수록, 그 일상적 혜택의 박탈은 훨씬 증하게 받아들여진다. 다시말해 1일의 구금의 실질가치가 더욱 늘어가는 것이다.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레저시간이 늘수록 자유형의 기간과 빈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변한 것은 범죄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아니라, 자유형의 실질가치가 증대한 것이다. 고도산업사회, 복지사회로의 발전은 보다 많은 소유기회를 허용하고,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박탈(자유형)보다 금전의 박탈(벌금형, 물수형)을 더욱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같이 형벌가치의 개념의 도입으로, 자유형의 상대적감소와 벌금형의 상대적 증가경향을 범죄의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6)</sup>

6 구금율을 나라별로 비교해 볼 때 그 국가의 범죄율과 구금율 사이에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가장 좋은 예가 네덜란드일 것이다. 네덜란드는 원래부터 낮은 구금율로 유명한데,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인구 100,000명당 구금율은 66명에서 17명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시기는 범죄의 대단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 기간동안 영국에서는 범죄의 현저한 증가가

Christie의 이론은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들어맞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변화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형의 감소를 위한 분명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처벌강화의 방향은 특히 마약범죄, 성폭력, 경제사범, 환경범죄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신종 범죄이거나 최근들어 그 범죄성이 보다 중대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있었고, 구금율은 평균 47명에서 85명으로까지 올라갔다. 영국은 20세기 초부터 자유형을 감소.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세기 후반에는 이 방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금율이 범죄의 양, 질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는 명제는 더이상 성립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연구들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 3. 형벌 및 행형이론상의 새로운 경향

#### (1) 의료모델, 강제적 처우에 대한 비판

20세기의 전반과 중반에 걸쳐 북구 형사정책의 지도이념은 교정처우(correctional treatment) 혹은 사회복귀(rehabilitation)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보는 병리적 인간상에 기초하여, 개별 범죄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범죄자의 처우와 재사회화를 피하자는 것이다. 교정처우 내지 사회복귀사상은 범죄에 대한 설명과 그 해결에 있어 의료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범죄자는 병리적 인간, 교정당국은 의사, 수형기간은 입원치료기간에 비유된다. 의료모델에 입각한 처우 제도는 처우의 개별화, 형의 부정기화, 그리고 교정당국의 재량권의 확대 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라 할지라도 그의 체질과 병력에 따라 다른 처방이 내려지듯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진단.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사회적 특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수용되어야 하며, 입소와 출소시기 및 처우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성인범죄자보다 특수하고 한정된 집단을 겨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소년범,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 상습범, 알콜 및 약물남용사범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한 특수처우의 발전에 노력이 경주되어 왔던 것이다. 북구 제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이론적 발전과 법적, 제도적 실천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처우'에 대해 60년대부터 북구 각국에서 커다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료모델은 행형담당자에게는 그럴수 없이 좋은 정당화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을 형벌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육체적 질병에 대해 항생제를 투약한다거나 외과수술을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범죄자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수형자와 교정당국 간의 기본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수형자와 교정당국은 자발적으로 만난 관계도 아니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전제로, 후자의 처우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에 본질적인 이익과 관심의 차이가 없는데 반해, 수형자와 교정당국은 불신과 적대감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형자는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

7) 의료모델 및 그에 입각한 각종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비판은 한인섭(1989) 및 한인섭(1990), 211-218면 참조.

한 총체적인 지배와 복종의 모습은 모든 처우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일수밖에 없다.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처우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Bishop, 1975 : 22).

Bondeson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수용시설에 있든지 간에, 시설내 처우는 치료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방해한다. 수용된 사실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수형자들은 고립감과 무감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하게 되며, 범죄적 생활양식을 용이하게 체득하게 된다. 시설내 생활에 적응하고 부정적 낙인을 갖게 됨으로써 일반사회에의 재적용은 더욱 곤란하게 된다. 시설내 수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모든 종류의 교정시설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소위 감옥화현상(prisonization)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수형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감옥화현상은 장기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의 재범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Bondeson, 1989 : 295). 감옥은 범죄의 학교라는 명제는 어떤 종류의 수용시설에도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 (2) 신고전주의의 북구적 전개

기존의 형사정책은 때로 정의롭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어졌다. 첫째, 개별화된 처우와 부정기의 구금은 형벌적용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Anttila, 1985 : 71). 국가기관의 부당한 재량권행사에 대해 수형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인권유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강제적 처우의 긍정적 치료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일반화되었다. 경험적 조사들은 교정처우의 방법으로부터 어떤 긍정적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발견될 수 있었던 적은 긍정적 결과도 예외적인 범죄자 집단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Bishop, 1975 : 22 ; Anttila, 1985 : 67).

셋째 범죄현상의 상대적인 편재성을 숨은 비행에 관한 연구들이 밝혀냄에 따라 범죄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리적인 존재로 묘사하기가 점점 곤란해졌다는 사정이 있다. 더구나 전통적 범죄와 구별되는 각종 현대적 범죄(경제범죄, 컴퓨터 범죄 등)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의료모델에 입각한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교정처우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리고 급진적인 형벌개혁론이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70년대에 접어들어 북구 각국은 법개정 작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형벌분야에서는 주로 교정처우에 입각한 특수 구금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의 방향으로, 형의 상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전에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고전주의적 법 이념, 가령 예측가능성, 정당성과 합리성, 법앞의 평등, 내지 형평, 범죄의 처벌 가치 등의 이념이 법개정의 방향을 인도하게 되었다.

형사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두 목표, 즉 공리적 요구와 정의론적 요구를 결합하려는 노력은 북구의 최근 형사정책의 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이는 효율적이고, 정의롭고, 인도적인 형사정책(*efficient, just and humane criminal policy*)이라 불리운다. 형사사법제도는 주로 효율성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지고 정당화되어진다. 하지만 형사제재는 이 효율성에 의거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의와 인도성의 요구가 충족되어져야 바람직한 제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사제재는 목표-수단의 견지(즉 효율성)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가치론적 측면(정의, 인도성)에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Lahti, 1990 : 96).

지금까지의 북구에서의 논의의 집약점을 Lahti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1990 : 96-97). 첫째 효율성 내지 공리성의 측면. 어떠한 형사정책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얻어질 이익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가 이용되어져야 한다. 형사제재의 효과는 무엇보다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측정되어져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일반예방효과의 면에서 본질적인 감소가 없다면 가능한 적은 고통과 적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 운용되어져야 한다.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은 일차적으로 일반예방을 기초로 평가되어져야 하지만, 개개의 형사제재를 선택, 집행할 경우에는 다른 공리적 근거, 가령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무해화 등의 근거 역시 중요하다.

둘째, 정의 및 공정의 측면. 형벌제도의 정당성은 그것이 법앞의 평등, 공정성 및 예견가능성의 원칙을 촉진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한다. 범죄개념과 형사제재는 형법에서의 적법성의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형벌규정 및 형적용은 책임성,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유무,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예컨대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등)를 충실히 실현하여야 한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직되어져야 한다.

셋째, 인도성의 측면.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 기타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제 원칙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용되어져야 한다. 형사제재를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할 경우 형평과 관용의 원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같이 형사정책에 있어서 효율성, 정의, 인도성의 원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종종 신법치주의(neo-legalism) 혹은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이라 불리기도 한다. 고전파 형벌사상의 핵심요소인 법앞의 평등,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제한적 적용과 관대한 처벌의 추구, 인권의 강조와 인도주의적 형벌의 추구 등을 새로운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명명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니라 보여진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도 '신고전주의'로 흔히 불리워지는 사조가 드세하고 있어, 그것과 혼동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미의 경우 신고전주의적 흐름은 법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혹은 권력남용의 제거를 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정기형의 폐지와 정기형으로의 회귀, 양형에서의 재량권 감소와 자의성을 억제하기 위한 표준지침서의 채택 등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다. 또한 형벌과 행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종래의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사법제도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Bottoms, 1980 : 10). 그러나 영미의 신고전주의는 많은 경우 영미권의 정치적 보수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보다 엄격한 법집행, 일반적 범죄억제 및 용보의 사상을 강조하는 등 전반적으로 억압적인 형벌과 행형에 대한 선호경향을 보여왔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보다 정의롭고 인도적인 형사정책을 모색하는 북구의 그것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북구의 경우에는 범죄억제(general deterrence)보다 범죄예방(general prevention)이란 용어를 즐겨 쓴다. 형벌의 억제효과는 일반예방의 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예방은 형벌의 잔혹성보다는 형벌의 확실성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일반예방의 더욱 중요한 측면은 특정행위를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사회의 선악, 도덕의 판별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Anttila, 1985 : 69).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여부는 공포를 통한 범죄억제가 아니라, 범죄자의 인지와 체포의 신속성, 확실성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규범의 내면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형벌이 제정, 집행될 때 달성을 될 수 있는 것이다. '규범의 내면화'는 반드시 중한 처벌로써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범죄자에 대한 경미한 벌금도 강력범에 대한 장기형에 못지 않게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Joutsen, 1992 : 40). 처벌이 아니라 규범의 내면화 혹은 규범의 각성을 위한 경미한 제재도 예상될 수 있다. 가령 핀란드에서는 처벌경고(penal warning)라는 제재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물리적 제재가 아니라 규범의 각성과 재내면화를 강화하기 위한 심리적 제재로 보여진다.

더우기 공식적 형벌에 대한 대안으로써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방법이 보다 강조된다. 사회변동에 따라 한 행위의 처벌가치도 변한다. 예컨대 생활수준이 향상됨

에 따라 자유형의 형기를 단축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Lahti, 1985 : 67).

어떤 행위에 형벌을 과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도덕감정 및 정의관에 영향을 미친다. 형벌의 탈도덕화를 역설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북구 각국에서선 이러한 형벌의 도덕형성적 기능을 강조해 왔다. 물론 이것이 엄격한 형벌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효과의 여부에 끗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도덕관과 가치관을 인도하는 상징적, 표현적 기능인 것이다.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형법 및 형벌이 사회 구 성원 전체에 의해 수긍될 수 있을 때 그것의 현실적, 상징적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벌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그 형벌이 범죄의 처벌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비례성의 원칙 및 그 형벌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평등의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될 때 확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형벌강화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점, 형벌의 도덕형성적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형벌의 정당성의 요소로써 비례성과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 등은 북구 형사정책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영미와는 달리 인도성의 원칙이 이 모든 개별적 원칙의 지도하고 제한하는 원리로써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 (3) 폐지론적 전망

감옥을 포함한 제반 수형시설에 대한 급진적 비판은 '감옥' 자체에 대한 폐지론으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폐지론(abolitionism)이란 용어는 특히 노예 해방과 관련하여, 그리고 사형의 철폐와 관련하여 주로 쓰여졌다. 노예제와 사형 제도가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하나의 '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었고 폐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지만, 그후의 역사는 이러한 폐지가 인도주의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임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당연하고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감옥제도와, 보다 넓게는 형벌제도 전반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보다 문명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옥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논자들은 특히 감옥제도의 역사적 한시성을 지적한다. 감옥의 탄생 자체는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각종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에 대한 성공적인 '폐지'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Scheerer, 1986 : 6). 18세기까

지만 해도 유럽 각국에서 자유형은 거의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지만,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다른 모든 형벌을 물리치고 지배적인 형벌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감옥 제도는 거대한 실패로 간주되고, 일종의 총체적 통제시설(total institution)로써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될 수 없는 결함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면, 그것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최근의 감옥폐지론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대안'의 추구가 아니라, '폐지'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가령 노예제의 폐지가 대안을 만들어낸 이후에 폐지되는 과정을 밟지 않았던 것처럼, 감옥폐지도 대안이 먼저 강구되고 난 뒤 폐지되어선 안된다. 왜냐하면 그 때의 대안은 진정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형사제재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제재를 더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대안이라 이름할 것은 폐지 이후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생성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벌에 대한 폐지론적 전망은 다른 어느 곳보다 북구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형벌완화의 정책방침과 수형자의 권리 및 처우수준의 향상은 형벌폐지론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북구에 독특한 하나의 지적 재산을 형성시키기에 이르렀다. 물론 폐지론이라 하여도, 그 강조점과 이론적 구성은 매우 다르다<sup>8)</sup>. 따라서 이하에서는 폐지론의 이론과 실천 양 방향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던 마티센의 이론을 중심으로 폐지론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티센은 60년대 중반부터 감옥의 폐지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작업을 주도해온 노르웨이의 학자이다. 그의 작업은 한편으로 북구의 감옥 및 형벌폐지, 축소를 지향하는 사회단체를 조직, 후원하는 정치적 실천<sup>9)</sup>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인 반감옥, 반형벌운동(abolitionism)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급진적, 비판적 이론의 발달에 기여해 왔다. 특히 그의 감옥폐지론은 선진적 형사상과 실천을 주도해 온 북구의 형벌사상의 보다 진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단순히 이론적 구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서의 투사를 목표로 하

8) 형벌폐지론은 결국 형벌의 억압성을 완화하는데 앞장서온 나라에서 생성된 이론이며, 형벌강화를 통해 범죄문제를 억압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그다지 동조자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가령 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 반면 네덜란드와 북구에서는 형사정책과 행형실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흔히 Christie, Hulsman, Foucault, 그리고 Mathiesen이 꼽히고 있다. 이 중에서 Christie는 형법에, Hulsman은 범죄개념에, Mathiesen은 감옥제도를 주로 겨냥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Christie, N.(1981) ; Foucault, M.(1977) ; Mathiesen, T.(1974) 등이 있으며, Bianchi, H.(1986)은 당시까지의 형벌폐지론에 대한 종합적 성과를 편집한 것이다.

9) 감옥제도의 폐해에 대한 문제점은 Mathiesen, T.(1965)에 요약했고,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반감옥운동을 조직, 활동한 경험을 이론화한 것이 Mathiesen, T.(1974)이며, 그러한 실천을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Mathiesen, T.(1980)으로 이어진다.

고 있는 점에서 복구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흔히 감옥폐지론이라 함은 감옥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마티센의 사상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는 감옥의 폐지를 자신의 급진적 형사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감옥을 역사적 유물로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의 이론과 그의 영향력이 반영된 반감옥조직(anti-prison organization)인 KROM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러한 폐지론에 대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대안은 언제나 이전의 감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감옥구조의 확대 내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Mathiesen, 1986b : 81). 진정한 대안은 현재 완성되지 않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관계의 모태에서 자라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단기적인 개혁과 장기적인 목표(즉 감옥폐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단기적인 개량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전망을 결여하기 쉽다. 마티센은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제기되어질 단기적인 개혁의 방향은 '부정적' 종류의 것이라 보고 있다. 즉 기존의 감옥구조의 기본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그것을 수선. 공고화하는 데 기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형자의 휴가 및 방문기회의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감옥을 보다 개방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개혁은 물론 기존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할수도 있지만 적어도 개념상으로 본다면 이는 반감옥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그 주체인 수형자들의 조직적 참여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감옥폐지론을 내걸고 실천적 작업을 했던 초기에 그는 장래의 전망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서구 세계 전체를 통해 감옥제도의 팽창경향이 70년대 중반이후 보여지고 있다. 경기의 후퇴, 사회전반의 보수화, 보수적 정당의 권력장악 등의 요인들이 겹쳐 감옥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어왔던 것이다. 감옥에 대한 보다 큰 의존, 장기형의 증가, 수형자의 증가 등은 영미권을 필두로 하여, 복구에까지 다소간 파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폐지론은 '공격적'이라기 보다 '방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Mathiesen, 1986b : 84).

그의 비판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첫째는 '감옥에 대한 대안'(alternative to imprisonment)에 대한 비판이다. 그동안 많은 대안들이 '탈시설구금화'(de carceration) 혹은 '정식절차로부터의 전환.우회'(diversion), 사회봉사명령, 중간처우시설 등의 이름으로 제기되고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들은 감옥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없다. 그것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공식적 법적 통제 아래 가져오게 하고, 전체적인 통제장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

옥에 대한 '보완' 내지 '부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획되고 구조화된 '대안'은 사실상 그물망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Cohen, 1985). 대안의 이러한 성격은, 정치가들이 기존 감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옹호하고 심지어 감옥의 확대론까지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을 옹호하는 '이중적 언사'(double talk)를 구사하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고 본다(Mathiesen, 1986b : 86).

감옥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감옥에 대한 보완에 불과하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감옥제도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일 것이다. 최근의 감옥의 팽창에 대한 그의 입론은 감옥의 팽창을 저지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감옥신축에 대한 긴급유예'(moratorium)를 국제학계에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유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수가 우선 줄어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수형자의 과밀화 현상으로 애먹고 있고, 그 때문에 감옥신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수형자의 증가는 범죄의 증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최근의 주장들에 그는 동조한다. 감옥제도의 팽창은 범죄율의 증가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 다시말해 공식적 범죄율과 수형자 인구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감옥제도의 팽창의 배경은 복잡하지만, 역사적, 비교적인 견지에서 볼 때 형사정책의 방향과 감옥이용의 빈도는 정치적 성향 및 정치적, 법적 기관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Mathiesen, 1986a : 84).

수형자의 수를 줄이는 과제는 양형상의 경미한 조정,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경미한 조정 등 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같이 감옥의 팽창에 대한 정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형벌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과 재검토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Mathiesen, 1986 : 88).

그러면 그는 왜 더이상의 감옥신축에 대해 반대하는가? 그 논거로써 그는 다음과 같은 8가지를 내세우고 있다(Mathiesen, 1986a : 84-89).

첫째, 감옥을 통한 특별예방효과의 주장에 대한 반박. 70년대 이후 자유박탈과 감옥시설을 통해 인간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자유형은 낮은 사회복귀와 높은 재범율을 결과하며, 인간성에 파괴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강제적 교정의 비효율성과 반인간성은 더많은 감옥을 신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수와 감옥에의 의존도를 급격히 줄여나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예방 내지 범죄억제효과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이러한 효과를 경험적 조사를 통해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설사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해도 사회내 범죄율의 발전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보다 훨씬 적은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다. 범죄율의 결정에 있어 형사정책은 가족, 학교 정책, 노동시장의 조건, 사회정책, 일반 형사사법기구의 조직과 기능, 경제제도

및 인간관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부차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수형자의 수, 형기는 더밀할 것도 없다.

감옥의 범죄억제효과를 논할 때 통제제도의 대규모의 변화와 사소한 변화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마티센에 따르면, 형벌수준의 대규모의 변화(가령 감옥의 폐지 등)는 확실히 범죄억제효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소한 변화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감옥신축의 반대론은 이러한 사소한 변화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는 양형정책, 가석방 및 석방요건을 약간씩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예방론에 의거하여 감옥신축반대론을 반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감옥신축에 대한 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가하는 범죄자, 감옥시설의 과밀화 등은 감옥신축 주장의 주요 논거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마티센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양형규정을 개정하고, 가석방요건을 완화하고, 미결구금자를 대폭 감소함으로써 과밀화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1983년에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석방을 허가하는 *필요적 가석방제(mandatory half-time release)*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덴마크에서는 1982년 재산범죄의 최고형을 줄이고, 가석방을 위한 최저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감옥인구의 팽창에 대한 해결책은 이와 같이 그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수정에서 구해져야 함을 그는 역설하고 있다.

넷째, 감옥건물은 한번 건축되면 쉽게 용도폐기되지 않으며 장기간 지속된다. 이를 마티센은 감옥건물의 불가역적 특성이라 표현한다.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세워진 감옥건물들이 오늘날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는 감옥건축이 단기적인 실용적 조치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의 일부로 보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더이상의 건축 계획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옥건축의 특성과도 관계된다.

다섯째, 감옥제도의 팽창주의적 특성을 지적한다. 사회제도로서의 감옥제도는 먹을수록 식욕이 커져가는 동물과도 같다. 새로운 감옥은, 기존 감옥에 대한 보완물이 아니라 대체물의 의도를 가진 감옥도 보완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대체물로써의 새로운 시설은 그 내부적, 외부적인 압력과 계기가 작용하면 곧바로 기존 제도의 확대판으로써 운용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여섯째,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감옥은 옹호될 수 없다. 감옥은 비인간성과 비인간적 제도의 표본이다. 감옥이 인간을 굴욕적인 상황속에 몰아넣고, 고립화시키며 자율성을 파괴한다. 흔히 구금에 따른 고통으로는 자유의 박탈, 여러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박탈, 이성간의 성관계의 박탈, 자율성의 박탈, 안전감의 박탈 등

이 지적된다. 물론 수용조건과 수용형태에 따라 다소의 편차는 있겠지만, 구금에 따른 고통은 구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감옥제도 자체의 일부로써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건의 개선에 따라 고통의 정도는 완화될수는 있어도 결코 없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자율성의 파괴와 안전감의 박탈로 지적된다.<sup>10)</sup> 수형자들은 명확한 권리의 부재와 교정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앞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새로운 감옥이 이전의 감옥보다 인도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일곱째, 문화수준과 가치관의 함양에 대해 끼칠 부정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감옥제도는 하나의 물질적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문화적 효과를 가지며 인간에 대한 일정한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감옥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폭력과 굴욕화를 강조한다. 감옥이 팽창될 때 이러한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감옥의 신축은 감옥을 통한 해결, 억압적 해결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선호하게끔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옥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논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것이다. 물론 마티센은 경제적 측면만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 어떤 제도가 인도적이고 합당한 가치를 대변한다면 비용이 더 드는 조치라 할지라도 기꺼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른 앞의 주장과 결합되어질 때 경제성의 측면은 감옥신축에 대한 반대논리를 보강하는 의미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티센은 결론적으로 감옥건축 및 신축의 이슈가 건축기술의 문제 혹은 수형자 인구의 변화에 따른 단기적 경향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가치의 선호를 어디에 둘 것인가, 동료 이웃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가 감옥건축 뿐 아니라 사회통제 전반에 걸쳐 주요한 의문으로 제기된다. 새로운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안적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상이 요청된다. 이같은 비전의 한 부분으로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권위주의적 측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조건을 발전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Mathiesen, 1986b, 86).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미완(unfinished)의, 개척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다.

10) 이러한 지적은 물론 물질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의 위협이 어느 정도 제거된 북구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수형자들은 절대적 궁핍과 질병의 위협, 그리고 무자비한 테러에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 경우 수형생활의 고통은 보다 원초적인 데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4. 형사제재분야의 개선을 위한 노력

##### (1) 형법개정과 형사제재

북구 각국에서는 지난 70년대 이래 형법의 기본원칙 및 형사제재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80년대에는 형법개정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형법개정의 중점은 형사제재 분야에서 신고전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재편성과 아울러, 형법각칙 분야에서 사회변동에 의거한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 교통범죄, 환경범죄, 컴퓨터 범죄 등이 새로이 부각되는 형법분야라면, 동의에 바탕을 둔 성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범죄화의 추이가 보여지고 있다.<sup>11)</sup>

북구 각국의 형법개정논의는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그 개정의 골자도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1989년에 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89년 형법은 1965년의 형법을 새로운 형사정책의 조류에 입각하여 수정한 것이다. 신형법은 특히 형사제재 및 양형에 있어서 신고전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Cornils, 1990 : 964)<sup>12)</sup>.

1965년 형법은 형사제재의 측면에서 범죄예방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제재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고려가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임을 명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일반예방은 자유형의 요소를 포함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특별예방에 대한 강조는 자유형을 포함하지 않는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별예방이 일반예방보다 더욱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Lundquist, 1990 : 100).

그러나 형법전이 시행된 이후에 그러한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와 비판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예방에 대한 관념, 특히 특별예방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형벌을 통한 범죄자의 처우, 교정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인 법원리로부터 제기되었다. 형사제재에 있어서 고전적인 법원리, 즉 법앞의 평등과 비례의 원칙, 예측가능성, 등의 원리들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러한 신고전주의의 대두에 의해 예방에 기초한 기존 형사제재제도들이 도전받게 되었다. 그러한 토론의 과정에서 1980년에는

11) 상세는 Eser, hrsg. (1985) ; Eser & Huber, hrsg. (1990)에 실려있는 북구 각국에 관한 보고서 부분 참조.

12) 신형법은 또한 약물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의 입장은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원상회복조치와 형사절차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사인소추와 동행제도(Nebenklage)에서 보여지는 피해자 지위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 상세는 Cornils(1985) 및 Cornils(1990) 참조.

소년범에 대한 자유형(Youth Imprisonment)<sup>13)</sup>이 폐지되었고, 1981년에는 상습누범(persistent offender)에 대한 무해화 처분에 해당하는 억류제(internment)<sup>14)</sup>가 폐지되었다.

1989년의 개정형법에서는 양형과 형사제재의 선택에 관한 신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본적인 의도는 형사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uniformity)을 높이자는 데 있다.

종래 형사제재의 결정의 바탕이 되어왔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관념은 폐기되었다. 그에 대신하여 범죄의 처벌가치(penal value)가 주요한 결정지침이 되었다.<sup>15)</sup> 범죄의 불법성의 정도 및 범죄자의 유책성이 가장 고려되었고, 가중경감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sup>16)</sup>

13) 소년교도소제도는 1935년 스웨덴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소년비행자를 수용하여, 부정기의 기간동안 소년교도소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처우내용으로는 교육과 훈련의 제반 요소가 포함되었다. 후에 이 제도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비형벌적 대안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후에 그 훈련의 긍정적 효과가 의문시되었고 그로 인해 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Bondeson (1989), 13면 참조.

14) 억류제는 중범죄자에 대한 예방구금과 교정처우를 표방한 대안적 형사처분으로 1927년에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심각한 폭력성 범죄자를 수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곧 상습절도범과 사기범을 망라하게 되었다. 억류기간은 부정기이지만, 최소 1년의 하한선을 갖고 있었다.

15) 형법 제 29장 제 1조는 제재의 선택과 그 면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균일하고 일관성 있는 양형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범죄의 처벌가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형벌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처벌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범죄에 의해 초래된 손해, 침해 혹은 위험 및 범죄자의 의도와 동기 등에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NCCP; 1990 : 97-98).

16) 형법 제 29조 제 2항 : '특정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처벌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가중사유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범죄자가 실제로 발생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을 것을 의도한 경우.
2. 범죄자가 특별한 잔혹성을 나타낸 경우.
3. 범죄자가 타인의 취약한 지위 혹은 방어곤란성을 이용한 경우.
4. 범죄자가 그의 지위를 심각하게 남용했거나 특별한 신임관계를 남용한 경우.
5. 범죄자가 타인에게 강제, 기망을 통해, 혹은 타인의 年少, 知慮淺薄 혹은 종속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경우.
6. 범죄가 특별히 신중하게 계획되거나 대형으로 이루어진 범죄활동의 일부이고 거기에 범죄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형법 제 29조 제 3항 : '특정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처벌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의 감경사유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범죄가 대체로 타인의 공격행위에 의해 초래된 경우
2. 범죄자가 정신이상, 정서적 홍분 기타 사유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던 경우
3. 범죄자의 행위가 그의 현저한 발육상의 장애 경험부족 혹은 판단력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4. 범죄가 강렬한 인간적 동정심에 의해 초래된 경우

자유형은 주로 두가지 상황에서 선택되어진다. 해당 범죄의 처벌가치가 높은 경우 및 범죄자의 전과가 자유형 이외의 다른 형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특성상 비록 초범자라 할지라도 일차적인 재재로써 자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러하다(Lundquist, 1990 : 103).

## (2) 자유형의 감소론과 변형된 자유형

북구에서는 선진적인 행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유형 및 교정시설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사회복귀 사상의 쇠퇴와 함께 강제적 교정을 통한 재범방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자유형 및 교정시설이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면, 자유형의 기간과 사용빈도가 모두 감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북구의 모든 나라들은 자유형의 감소를 법원칙의 면에서, 그리고 법집행의 면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시설내 구금의 비효율성과 유해성에 대한 비판은 북구 각국에서 정부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 차원에서 자유형 사용의 감소 및 소년교도소와 억류제와 같은 부정기형의 폐지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80년대 초의 한 정부보고에 따르면, ‘자유형과 시설내 구금의 형태를 통해 개인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널리 인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형벌은 개인의 인격에 파괴적인 효과와 함께 보잘것 없는 사회복귀율과 높은 재범율을 초래하는 것이다’. 시설내 처우의 인간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금으로 도배를 한다해도 어쨌든 감옥은 감옥인 것이다(Bondeson, 1989 : 297).

수형자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입법적 차원과 법집행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1981년 자유형의 최단기간을 1월에서 2주로 낮추었고,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후 필요적 가석방제(mandatory parole)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수형자인구를 즉각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1986년의 형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정형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으로 양형수준의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Bondeson, 1989 : 298).

법원은 그 범죄의 처벌가치에 비추어 명백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해 규정된 것보다 경미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자유형 감소론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근거가 제시된다. 첫째 시설내 교정처우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스웨덴의 교정시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정처우는 실제로 전혀 효력이 없으며 시설내 수요에 따른 부정적 효과(예컨대 범죄경력의 발전, 범죄자낙인의 부여 등)는 죄질에 상관없이 시설내에서 보낸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의 시차를 두고 행해진 추행조사(follow-up study)의 결과 자유형을 경험한 자들의 재범율이 극히 높았고, 따라서 재범율과 가장 관련된 것은 바로 수형체험(prisonization) 그 자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Bondeson, 1989).

둘째 재정적인 견지에서 자유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자유형 집행에 따른 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재소자 1인당 매일 소요되는 비용이 150불에 이르고 있다. 그에 반해 대안적 재재수단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ndeson, 1990 : 20).

셋째 인도적인 견지에서 자유형 반대론이 북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유형을 세밀하게 살펴볼 경우 대단히 큰 고통을 안겨주며,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 및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 형벌개혁론자 및 인권단체들은 주로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형 반대론을 표방하고 있으며, 급진론자들은 수형시설의 폐지론을 역설하고 있다.

자유형의 감소 대신 자유형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식은 자유형의 집행방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자유형의 분할집행(part-time sentence)이라고 부를만한 이 방법은 야간구금과 주말구금과 같은 반(半)자유처우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sup>17)</sup> 덴마크의 경우 주말구금은 단기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 한번에 40-48시간씩 몇주의 주말에 구금하고 있다(Kalmthout, 1988 : 34-35). 주말구금의 잇점은 평일에 그의 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실직과 사회적 격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인력관리와 질서유지상의 번거로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주말구금은 단기자유형의 한 집행방법 혹은 단기자유형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대체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야간구금은 주말구금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주말구금보다 비교적 장기적인 자유형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 (3) 자유형에 대한 대안 : 벌금, 사회봉사명령 기타

자유형에 대한 대안은 크게 조건부 자유형, 벌금형,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의 3

17) 반자유처우의 형태는 벨기에의 반구금(semi-detention), 프랑스의 정기구금(periodic detention)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첫째, 보다 전통적인 대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조건부 석방(conditional release)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조건부 형벌(conditional sentence)이 해당된다. 유죄로 인정된 자에 대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프로베이션 및 형기의 종료 이전에 석방하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퍼로울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19세기 말 영미에서 기원한 것으로, 20세기 초 북구 제국에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둘째,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더욱 널리 적용하자는 대안이 추구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벌금형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북구제국에서는 벌금형을 비롯한 재산형이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더욱 선호되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널리 적용하려 할 때 문제점은 재산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차별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점과 벌금의 미납시 대체 자유형으로의 전환의 정도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수벌금제(day-fine system)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일수벌금은 두단계에 걸쳐 결정된다. 먼저 각 범죄의 죄질에 따라 제재일수가 정해진다. 즉 경미한 범죄일수록 적은 일수가, 심각한 범죄일수록 많은 일수가 정해진다. 다음 각 일수당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금액은 범죄자의 수입수준, 필요경비, 부양가족수, 자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 이 일수와 금액을 곱한 총액이 벌금으로 과해진다. 이러한 절차의 잇점은 범죄수준에 관한 평가가 모든 범죄자에게 동일하게 행해짐으로써 법앞의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금액산정에서 범죄자의 경제사정을 감안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수입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적용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Bishop, 1988 : 82).

북구제국들은 이러한 일수벌금제를 가장 먼저 창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921년에, 스웨덴에서는 1931년에 도입되었다. 현재는 유럽각국에 도입되었고(Bishop, 1988 . 82 이하), 우리의 형법개정안에서도 그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일수벌금제는 대단히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벌금대상자의 90% 이상이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 미납자(약 10%) 들의 대부분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자유형으로의 대체는 벌금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에 한정된다. 벌금형의 미납으로 자유형의 처분을 받은 자의 수는 극히 적으며, 1984년부터 87년까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shop, 1988: 83). 벌금납부의 편의를 위해 벌금의 분할납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Bondeson, 1990: 21).

또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는 벌금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 법원, 검찰 혹은 재무부, 국세청 등 담당기관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앞으로 벌금징수를 재무부(fiscal authorities)의 관장사항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거두는 제반 자금에 대해 경험이 있는 기관이 맡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벌금징수 역시 국가에 관한 자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Bishop, 1988 : 85). 이같은 방식은 벌금징수의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잇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최근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써, 그리고 하나의 독립적인 제재수단으로써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975년 영국<sup>18</sup>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형벌의 일부로 도입했거나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가 수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일정시간 동안(보통 40시간 내지 240시간 사이에 결정된다) 무보수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봉사명령은 6월 이내의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Bishop, 1988 : 68). 통상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북구제국 중 사회봉사명령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덴마크이며 다음이 노르웨이이다. 전자는 1982년부터, 후자는 1984년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해오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그에 대한 반대입장이 우세했는데, 그 근거는 형사재판에서 응보와 비례성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의 형벌사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질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사회봉사명령의 도입론이 세를 얻어, 90년부터 92년까지 시험실시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그 내용은 40내지 200시간 동안의 무보수봉사를 야간과 주말에 실시하며,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 18내지 24세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Bondeson, 1990 : 26).

덴마크의 사회봉사명령은 무조건의 자유형(unconditional imprisonment)에 대한 대안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도입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영국에서처럼 사회봉사명령이 자유형보다 경미한 비구금적 제재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됨으로써 사실상 형벌 강화의 방향으로 귀결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리부터 제한사항을 부과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될 자유형의 상한선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 6-8월의 자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질 범죄유형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주로 재산범에 대해 적용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적용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18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75년에, 스코틀랜드는 1978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Bondeson, 1990 : 22). 반면 약물 중독자 및 음주운전자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적용될 수 없으며, 폭력범도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Bishop, 1988 : 193).

사회봉사의 내용은 법원이 범죄자에게 일정시간(40 내지 200시간)동안 작업의 무를 과하는 판결을 한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사회봉사명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이다. 만약 사회봉사의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반응, 통상적으로는 법원의 심리와 자유형이 선고된다.

#### (4) 혁신적 대안의 실험 : 계약처우제와 분쟁조정제도

1) 스웨덴에서는 최근 자유형 대신 사회내 처우의 방법으로 알콜문제와 마약문제를 가진 자들을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에 계약처우(contract treatment)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범죄자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알콜문제와 마약남용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치료는 수형시설이 아닌 치료시설에서, 보다 빈번하게는 일종의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에서 행해진다. 이 제재는 2년이내의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된 것이다(Lundquist, 1990 : 102). 스웨덴의 수형자 중 60% 가량이 알콜, 마약,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올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고, 따라서 계약처우는 수형시설 밖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대안으로 주목된다(Kalmthout & Ta k, 1988 : 298).

이 제재는 강제적 처우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존중하고, 시설 내 처우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범죄자의 동의하에 사회내 치료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대단히 스웨덴적인 접근방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스웨덴에 이어 덴마크에서도 알콜 및 마약남용과 관련된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계약처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이 법무부에 의해 제출되었다.

2) 북구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양 당사자의 참여하에 범죄=갈등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가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논자 중의 하나는 N. Christi이다(Christi, 1977 참조).

Christi는 범죄와 관련된 갈등이 제거 혹은 진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반대한다. 오히려 갈등은 당사자들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대의 산업사회에서 갈등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법률전문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취급된다. 법률전문가들은 타인간의 갈등을 대변함으로써 그 갈등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데 능숙하다. Christi는 변호사들을 타인의 갈등을 훔치는 직업절도범으로 표현하고 있다(Christi, 1977 : 4). 범죄적 갈등은 이제 다른 사람 즉 법률가의 재산으로 된 것이다.

다른 맥락에서 보면 갈등은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가능성을 대변한다. 근대적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여기서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범죄의 피해자이다. 그는 범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기 사건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의 수호신으로 범죄자를 질타하는 것은 국가의 뜻이지 피해자의 뜻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달리 만날 길도 없다. 범죄자 역시 많은 가능성을 상실한다. 그는 물론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하겠지만, 자신에게 불가해한 법적 담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인 청중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다. 만일 피해자와 개인적인 대면을 하게 된다면, 그로서는 중화(정당화)할수 없는 종류의 비난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자신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여러종류의 참여기회가 상실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대안 중의 하나로 피해자 중심적 법원(victim-oriented court)를 제안한다. 이 법원에서는 일어났던 일들이 상세히 논의되고, 피해자의 상황이 진지하게 고려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 범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신중하게 검토된다. 다음 가해자의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측면 역시 진지하게 고려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범죄이전의 상태에 유사하도록 되돌려놓을 능력이 있는가, 가해자가 교육적, 의료적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 검토된다. 이러한 법원은 형사적 요소와 민사적 요소가 다소간 뒤섞여 있는 것이며, 그 중 민사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 이러한 재판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갈등의 당사자 및 그의 이웃(갈등의 재산이라면, 이는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재산이기도 하다)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평민법원(lay-oriented court)식 모델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Christi, 1977 : 10 이하).

그의 사상은 미국에서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켜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적인 실험으로 이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는 샌프란시스코 프로그램(San Francisco's Community Board Program)이 지적된다. 이 프로그램의 창안자들은 경찰과 법원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실제적 지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고, 따라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형사사법제도와 별개로 운용하고자 했다. 공언된 목표는 첫째 범죄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초기에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악화될 여지를 예방하자는 것과 둘째 일탈자의 낙인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에 따른 악영향을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대상을 반드시 형

사사건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가령 그 지역에 공터가 있어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원하는 차량소유자와 놀이터로 쓰고 싶은 아동들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더이상의 갈등 여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조정 프로그램은 지역의 가치를 강화시키고 이웃간의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웃간의 불편이나 민원, 부부간의 불화, 자전거 절도, 소규모의 싸움 등이 취급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져왔고, 그밖에도 소년범죄를 다루는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까지 두루 다루게 되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민과 관 양쪽으로부터 두루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음을 의미한다(Falck, 1990 : 59).

1980년에 센프란시스코 모델은 다시 노르웨이에 도입되어, 81년에는 분쟁조정 위원회(conflict councils 혹은 community mediation center)가 창설. 실험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는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구의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1인 이상의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범죄를 행한 경우에 생겨나는 분쟁에서 아동복지국의 지도를 받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분쟁조정을 위한 전제는 범죄자 및 피해자가 그 사안을 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합의하고, 또 그 사안이 실형(자유형)을 받을만큼 중대하지는 않은 사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당사자는 각 지구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명된 중립적인 제3자와 면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범죄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범죄자는 아무런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된다(Falck, 1990 : 57).

그 구상은 청소년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대신 아동복지기관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제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을 경찰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하여, 거기서 신속하게 범죄자와 피해자를 대면시켜 참여하에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훈련을 거친 조정자를 사용하게 된다(Bondeson, 1990 : 27).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초범자, 그 중에서도 청소년 범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성범죄, 폭력범죄(경미한 사안은 제외), 피해자없는 범죄(가령 마약사범) 등은 다루어질 사안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은 보다 경미한 소년사범을 위원회에 이송하게 된다. 다루어지는 사안 중 다수는 절도, 주거침입, 기물파손 등이며 형사사건이 아닌 것도 일부 포함된다.

여태까지의 실행결과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자 가운데 재범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로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 첫째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고소의

각하가 뒤따름으로써 초범의 경우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전과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보일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의 여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기 사건에 적극 참여하여 자기 입장을 알리고 입은 피해를 드러냄으로써, 배상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한다. 가해자의 경우 처벌의 위협 속에서가 아니라 선행을 통해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된다. 셋째로 조기에 개입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의 효과를 직접 느끼고 잘못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범죄(및 범죄공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추상적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기능할 경우 지역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사회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공식적 국가기관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친화력있게 다가갈 때 현실화될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0년간의 시험실시의 단계를 거쳐 9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새 법률에 따르면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Falck, 1990 : 56).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경찰과는 다른 국가기관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배상하면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등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모델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실험되고 있다.

## 5. 범죄피해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오늘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각국의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주요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각종의 국제회의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토론되어지고 또 이론적 발전이 두드러진 분야가 바로 피해자 연구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연구는 비단 피해자 자신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형사정책 전반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구의 경우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위한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고 입법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여기서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최근의 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는 정중히 대우받고 자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988년의 경찰조례에서는 범죄에 의해 영향받은 자들에게 경찰은 특별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과 만날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몇몇 지역경찰에서는 '피해자 지원반'(victim support unit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Joutsen & Shapland, 1989 : 10). 최근에 또한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출두할 때 그에게 제공된다. 이 책은 범죄발생으로부터 형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가 소개되어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정보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둘째, 현행의 스웨덴 법제에 따르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 검사는 기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사건을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다룰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988년 1월부터 개정된 소송절차법(Code of Juridical Procedure)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출할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법원은 이전보다 자주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취급해야 한다. 그에 따라 경찰 역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피해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제는 북구의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시행되고 있다(Bondeson, 1990 : 27). 배상명령은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제재, 보호관찰 및 자유형의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과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보다 실질적인 배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이 난다해도 범죄자가 그것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범죄자가 파산이나 압류를 당할 경우 범죄에 대한 배상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스웨덴에서는 1971년에 국가보상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개인적·대물적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상은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혹은 보험상의 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된다.

국가보상제도는 보통 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이후 재산범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스웨덴의 경우 1988년의 법률 개정으로 나아가 모

든 범죄에 대한 피해에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이렇게 국가보상법의 적용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기반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북구 국가에서도 피해자 보상제도는 널리 실시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혀져가는 추세에 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법적 부조와 지원을 들 수 있다. 법률부조에 관한 입법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맡을 변호인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심 및 소송에서 피해자는 개인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적절한 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피해자원조자(victim assistan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피해자원조자는 예심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법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부조, 정서적 지원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Falkner, 1989 : 86).

피해자원조자의 역할은 예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관심과 이익을 보살피는 것이다. 피해자를 변호할 권리 역시 그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원조자의 활동에 따른 댓가는 국가에 의해 지불된다. 피해자원조자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도 보여지고 있다(Joutsen & Shapland, 1989 : 18).

다섯째, 이유없이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자로부터 사람들(보통은 여성)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을 발할 수 있는 법률이 88년에 통과되었다(Falkner, 1989 : 86).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령 갑이 을에 대해 범죄를 할 위험이 있거나 뒤쫓아다니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 혹은 법원은 갑에게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을을 방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을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갑이 이 명령을 위반한다면, 갑에게 벌금 혹은 6월 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학대받거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들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를 꾀하는 한 방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조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비판의 방향은 주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경미하다는 데 향해지고 있다.

그밖에 스웨덴에서는 학대와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많은 '여성의 집'(women house)가 있다. 이 여성의 집은私人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가 주어진다. 앞으로 정부보조금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개인 및 비정부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다른 움직임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처기관(victim emergency offices)이다. 이 기관은, 경찰에 범죄가 신고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와 접촉

하는 등 지역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피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단체의 앞으로의 과제는 관료화된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기도 하다.

## 6. 북구의 교정정책에 대한 검토

북구 각국은 발전된 사회복지와 선진적 교정정책으로 국제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북구의 교정시설은 대체로 보다 소규모이며, 보다 개방적이고, 수형자 1인당 교정직원의 수도 더 많으며, 평균형기도 훨씬 짧은 편이다. 또한 수형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다방면으로 추구되고 있으며, 교정교화분야에서 시민참여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행형개혁은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지지에서 그 원인의 일단을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행형개혁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북구 각국은 인도적인 행형개혁의 모범국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북구 제국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지만, 이하에서는 주로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충적으로 서술하기로 하겠다.

### (1) 감옥개혁운동의 전개와 성과

북구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와 행형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역시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제기를 의미있게 수용하면서 오늘날의 행형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북구의 감옥운동(prison movement)은 단순한 감옥개혁(prison reform)을 넘어 자유형 및 교정제도에 대한 폐지론을 역설하는데까지 나아가고, 그러한 이론을 운동화하는 데 있어서 수형자와 출소자, 학자와 시민 간에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고 있음이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대략 60년대 후반부터 북구 각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개혁의 움직임은 감옥의 내부로부터(즉 수형자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출소자, 재소자 및 일반시민의 결합으로부터) 거의 동시에 제기되었다.

먼저 외부로부터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개혁운동의 시발점은 스웨덴의 KRUM(스웨덴 감옥개혁협회의 약칭)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조직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파급되어 1967년에는 KROM(인도적 형사정책을 위한 덴마크협회), 1968년에는 KROM(노르웨이 감옥개혁협회)으로 이어졌고 상호 연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초기에 개개 수형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조직의 측면과 형벌제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조직의 측면이 이들 조직에 혼재되어 있었으나, 점차 후자의 방향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들 조직은 교정당국과 기성 정치집단과 계속 갈등하는 비판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특색을 드러내게 되었다(Mathiesen & Roine, 1975 : 86).

이들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는 특히 감옥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사회 전체의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구조변화의 일부로 실현될 수 있다. 단기적인 목표는 제도의 폐해상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특정 감옥의 철폐를 위한 노력이다. 여기에는 소년수형시설(youth prison)의 철폐, 미결구금시설의 활용을 대폭 축소하는 것, 서신 및 원고에 대한 검열제도의 철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전망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가령 특정 시설의 철폐가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사회내 처우의 대안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승리가 무용화되어버릴 우려를 지적한다. 따라서 비판적 감옥운동은 기존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제도의 일부를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이들의 이론적 대변인 마티센은 주장한다(Mathiesen, 1974).

이들 조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출소자와 수형자가 접하는 비중이다. 감옥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출소자들은 문제를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교정당국의 움직임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형자들의 역할이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수형자와의 접촉을 통해 교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조직활동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수형자들과의 접촉선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조직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음 내부로부터의 움직임은 수형자들의 단체 결성과 활동을 들 수 있다. 스웨덴에서 수형자조합은 1970년에 결성되었다. 그 해 전국적인 단식 스트라이크가 있었고, 5000명의 수형자 중 절반이 거기에 가담했다. KRUM에 의해 후원된 이 스트라이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교정당국은 수형자 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했다. 이러한 항쟁의 계기 중의 하나는 현대식 공장형 교도소에 대한 불만--전기안전장치, 공장과 거실 사이의 지하터널, 대교모 작업장 등을 갖춘--이었다. 수형자들은 요구조건 가운데 전국적인 협상을 위한 수형자조직의 합법화를 내세웠고, 그 결과 FFCO(수형자 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FFCO는 당국과의 협상에서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첫째 귀휴제에 대한

일련의 요구이다. 구속시점과 첫번째 귀휴 사이의 기간의 단축, 첫번째 귀휴를 결정할 때 미결구금기간을 포함시킬 것, 장기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귀휴 이외에 '선행'에 따른 포상으로써의 귀휴제의 허가 등이 제출되었다. 둘째 수형자에 대한 접견권의 확대실시에 대한 주장이 있다. 수형자에 대한 접견은 월 2회로 하고 각 접견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것, 개방교도소에서는 접견에 대한 어떤 감독도 행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폐쇄교도소의 경우에도 마약반입 여부 등 최소한의 사항만 감독할 것, 수형자의 거실에 대한 방문을 허용할 것, 장기수형자 혹은 귀휴가 금지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가할 것, 접견실에 침대를 비치하고 커튼을 치는 등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것 등이 제출되었다(Ward, 1972 : 251-2).

귀휴 및 수형자접견제에 더하여 논의된 쟁점들은 교도소에서 전화박스의 설치, 수형자조합의 인정, 일체의 서신검열의 중지, 교도작업에 대한 임금인상, 소내에서 공부할 기회의 확대, 도서관의 개선,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의 필요성 인정 등이었다.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형자 집단은 많은 분야에서 개선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대등한 상대로서의 협상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수형자집단의 요구는 부인되었다. 대신 수형자조합이 교정당국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그 조합의 요구가 당국에 의해 검토되는 등 그 존재의의가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 다시말해 독립적인 수형자조합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러한 스웨덴의 예를 참조하여 노르웨이에서는 FFF(수형자 노동조합)이 1972년에, 덴마크에서는 FL0(수형자노동조합)이 1973년에 설립되었다. 이들 조합 역시 스웨덴과 유사하게 임금인상, 수형자 접견기회의 확대 및 감시감독의 축소, 시설내에서 년 3주의 휴가, 자기 수입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의 보장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다(Mathiesen & Roine, 1975 : 92-93). 수형자의 조합은 외부의 감옥운동단체와 긴밀한 접촉과 후원하에 성장해 왔으며, 나아가 북구 각국의 유관단체들과 정보교류 및 상호연대를 피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옥개혁운동은 북구에서 70년대 초반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노르웨이를 예로 들면, 알콜 방랑자(alcoholic vagrant)에 대한 강제노동은 1970년에 폐지되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단기 자유형을 피한 소위 detention centre를 만들고자 한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또한 1974년에는 소년법에 대한 부정기의 자유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가 폐지되었고, 대신 소년법은 보다 단기의 정기형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부정기의 예방구금제 역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시설내 처우와 관련하여 서신에 대한 검열이 완화되었고, 귀휴제가 확대되었다. 수형자가 언론기관에 송고하는 것에 대한 검열제가 완화되어, 당국의 정보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Mathiesen & Roine, 1975 : 94). 이같이 여러 '특수'한 시설내 처우의 형태가 폐지 혹은 제한되었고, 수형자

들은 보다 많은 자유를 얻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 정책적, 법적 보장

197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의 행형위기와 감옥폭동은 정부로 하여금 종래의 교정정책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1974년에 나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내 처우를 통해 궁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백히 결론지웠다. 대신 수형자들이 많은 형태의 실제적 도움과 심리적 처우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수형자는 모든 형태의 도움을 일반 시민과 같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형체험에 당연히 수반되어온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형자들에게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접촉이야말로 진실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부위원회는 교정시설을 근접성(proximity)의 원칙 및 정상성(normality)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조직할 것을 제안했다(Bishop, 1991 : 605). 근접성의 원칙이라 함은 교정시설이 범죄자가 생활해온 지역사회에 가까이 자리잡아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정당국은 광범한 기회, 예컨대 외부통근 및 통학, 귀휴 및 장기체류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수형자의 경우 그 수가 적다고 해서 전국에서 한곳으로 집결시켜 수용해왔는데, 이는 근접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위원회는 또한 교정시설에서 그 자체의 특별한 사회적, 교육적 서비스를 운영해온 관행을 문제삼았다. 수형자는 다른 시민과 같이 그 지역의 사회적, 의학적, 교육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성의 원칙이다. 서비스의 중복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兩性을 고려한, 새로운 지방교도소(neighbourhood prison)를 신축하고, 부적절한 교도소를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교도소는 무엇보다 지역제도 속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결구치시설, 지방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또한 교도소와 보호관찰 담당기관은 그 지방의 사회적, 의학적, 교육적 서비스와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이리하여 교도소의 수는 각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지방단위로 확충되었다.<sup>19)</sup>

19 스웨덴의 수형시설은 국가교도소와 지방교도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및 보호관찰국에 의해 관장되는데, 88년 현재 19개의 폐쇄교도소(수용능력 1285명)와 9개의 개방교도소(수용능력 468명)가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Kumla에는 21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밖의 교도소는 대개

1974년 제정된 교도소 처우법(Prison Treatment Act)에 따르면, 교도작업의 일차적 목표를 수형자의 사회내 적응의 촉진과 자유형의 유해한 결과를 억제하는데 두고 있다. 처음부터 바깥사회에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처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의사가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교정의 다른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었다(Bishop, 1991 : 606).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수형자(연간 입소자 중 90% 정도)는 통상 그들의 거주지에 가까운 지방교도소로 배치되어야 한다. 1년이상의 형을 복역하는 자도 형기의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면 지방교도소로 갈 수 있다. 지방교도소의 규모는 40 내지 60인의 재소자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소형이며, 재소자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다(Coelho, 1986 : 27). 이같은 정책은 재소자와 사회적 환경 간에 관계형성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기업체와 사회봉사기관과의 접촉에 도움이 된다. 정상적 생활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시설수감에 따른 사회관계의 장애를 줄여나가고자 한다.

수형기간동안에도 일반사회의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권리는 재소자에게도 인정된다. 그 결과 지역사회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교정당국은 그와 독자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몇가지 잇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교정당국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지역사회는 범죄자에 대해 그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또한 수형자는 스스로 외부세계와 일정한 접촉을 할 책임을 부여받음으로써,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견지에서 자신의 활동과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스웨덴의 교도소는 대단히 소규모로 운영되며, 지방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규모 교도소 및 과밀수용화에 따른 폐단이 나타나지 않으며, 집권화와 관료화에 따른 위험성도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sup>20)</sup>

### (3) 스웨덴의 모델감옥 : 그 특성

시설내 처우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해도, 중범죄자와 특수범죄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의 자유형의 필요성이 전혀 부인될 수는 없는 이상, 수형자에

10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다.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들은 특별경비시설이 있는 세계의 중경비교도소에 수용된다.

20 수용인구의 과밀화에 따른 폐단에 대해서는 한인섭(1991, 380-383 참조).

대한 처우 프로그램은 여전히 중요한 행정정책의 한 분야가 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처우 프로그램은 구금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여나가면서, 수형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보다 강조한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입안, 실행함에 있어서는 처우의 강제성을 탈피하면서 수형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수용하면서 스웨덴에서 70년대 이후 이루어진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예들을 살펴보자. 먼저 수형자의 교육시설로서의 전문성을 살린 시설로 Studiegarden을 들 수 있다. Studiegarden은 20명을 수용하는 개방교도소로써, 수형자들은 모든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교도소에 입소하면 대략 6 내지 7개월간 머무르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각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직업훈련반, 대학반 등에서 공부하게 된다. 신청자는 많지만, 대개 2년 이상의 장기수형자들이 주로 입소하게 되며, 마약 및 알콜남용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소가 제한된다. 교사는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를 시간제로 채용한다. 또한 교무담당자는 교육기자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 대학반의 경우 혹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밖의 과정에 출석하기도 한다. Studigarten은 1967년에 개소했는데, 최근까지 하나의 의미있는 교육시설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nortum: 1978 : 211).

둘째 교도작업에 중점을 둔 시설로 Tillberga 개방교도소가 있다. 이 교도소는 120명의 수형자들이 소내 공장에서 주당 40시간씩, 정상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 수형자들의 작업은 작업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수형자들은 그 임금으로 식비를 공제한다. 임금의 75%는 가족부양, 저금, 혹은 채무변제, 벌금 등의 목적으로 적립한다. 나머지 25%는 원하는 바에 따라 주말휴가의 차비, 화장품, 가족에게 줄 선물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임금의 장기적인 적립과 계획은 프로그램의 명시적인 일부를 차지하며, 교도소측은 적절한 조언을 해줄 의무가 있다. 수형자들은 가석방시에 자신의 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Snortum, 1978 : 215).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수용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모든 수형자들은 자기 방이 있으며 방열쇠를 지니고 있다. 방안을 무단으로 옛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주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우편물은 검열없이 배달되고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자동전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개방교도소 수형자에게 허용된 휴가 이외에 월 1회의 휴가가 더 허용되는데, 이는 그들의 힘든 작업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삼립요양소에서 가족과 5주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이다. 이 요양소에는 어떤 담벽이나 경비원도 없으며, 거기서 그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에 관한 강습에

출석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갖는다.<sup>21)</sup>

Studiegarden과 Tillberger 교도소는 관념적인 것이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수형자에게 제공한다. 모든 교정시설이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수형자의 개선목표가 시설여건을 개선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장단기적으로 재범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든간에, 순수히 인도적 견지에서도 이같은 시도는 지속될 가치가 있다. 예컨대 재범을 여부와 상관없이 수형자에게 근로임금을 지불하여 그것으로 채무를 갚게 하고 출소후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수형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아무런 금전적 대책없이 길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 선다면, 임금지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정 프로그램은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을 중시하는 Studiegarden은 스웨덴의 노동조합에 의해 추진된 광범한 국민교육 운동의 자원과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교육과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하게 개발된 많은 교재 및 자료들로 인해 Studiegarden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재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흥미있고 유익한 자료를 수형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더우기 전국 각처에 있는 성인교육 센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출소자들은 쉽게 교도소에서 배운 지식을 발전시켜갈 수 있다(Snortum, 1978 : 219).

Tillberger 교도소와 같은 임금노동제에 의거한 공장형 작업방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조직노동자층의 묵시적, 가시적 지원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수형자들의 임금노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수형자의 출소후 계획과 직업일선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포용적인 태도는 스웨덴의 실업률이 대단히 낮았다는 사실과 관련되지만, 협소한 직업이익을 넘어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수준높은 의식에 크게 힘입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공장형 감옥에 대한 반대와 특히 교도작업의 임금제에 대한 반대가 조직노동자층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sup>22)</sup>과 비교할 때 스웨덴의 예는 감옥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의미있는 조화의 사례로 주목될 수 있겠다.

21 스웨덴에서는 수형자들을 위한 이같은 휴가시설(vacation village)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수형노동자의 유급휴가를 지낼 수 있는 장소로 혹은 폐쇄적인 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단기 휴식처로 제공된다.

22 서구의 역사에서 일반노동자들은 감옥노동이 자유노동과 경쟁관계에서 생기는 위협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실업이 늘어나는 불황기에는 특히 그러했다. 노동자들은 국가와 생산자축이 임금상승과 노동운동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써 감옥 노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았고, 시장판매용 생산품을 감옥에서 생산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 상세는 Gildmeister (1977), 127면 이하 참조.

#### (4)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 교도작업과 임금

스웨덴에서는 교도소 처우법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는 작업 혹은 공부를 할 의무가 있다. 근대적 시설을 갖추고 대량생산을 하는 것은 스웨덴 교도소의 오랜 전통의 일부였고, 감옥산업에 따른 매출액도 연간 2800만불에 이른다. 따라서 수형자를 위한 일거리를 찾는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두 국가교도소와 한 지방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에 따른 댓가는 시장임금과 같은 액수가 지급된다. 이같은 임금지급의 효과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교도소에서도 확대실시가 시험되고 있다. 시장임금을 받는 교도소에 수형자의 평균임금은 주당 180불 정도이며, 그밖의 교도소의 수형자들은 주당 평균 60불 정도를 받는다.

하나의 문제는 수형자들의 체질이 교도작업을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수형자들은 알콜과 마약남용의 경험이 있어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기준노동시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인이 시장임금제를 확대하는 데 하나의 제약요인이 된다. 대체로 부분 작업과 함께 공부나 '기술훈련,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병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수형자들은 또한 교도소 밖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매년 수형자 중 10%가량이 외부 통근 및 통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 중 1/3이 공부를 위해서, 2/3가 일을 위해서 나간다. 도중에 비행 기타 규칙위반이 있으면 외부통근(학)조치가 취소된다. 최근에 취소율은 약 16%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Bishop, 1991 : 610).

##### 면회, 서신수수, 전화사용

수형자에 대한 면회는 그 횟수와 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실무상 면회요구와 면회실의 이용가능성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너그로운 편이다. 예컨대 60인 이하를 수용하는 지방교도소에서는, 야간에 2시간 이내의 면회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종일간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다. 면회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도관이 입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진다(Bishop, 1991 : 613).

면회는 개별 면회실(private room)에서 행해지며, 면회실에는 탁자 및 의사, 침상이 비치되어 있다. 면회실 내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수형자와 방문자 사이의 프라이버시에 속한다. 성적 접촉도 물론 이루어질 수 있다.<sup>23)</sup> 교도소측의 관

23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자유형 순화론이다. 자유형은 자유의

심사는 방문자가 마약을 반입하거나 탈출모의에 도움을 제공하는 등 교도소측의 통제방침을 어기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다(Coelho, 1986 : 40). 마약, 폭발물 기타 소지금지품목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자에 대해 사전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때로는 방문자는 신체검색을 받기도 요구받는다. 이 때 방문자는 검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으며, 거부할 경우 면회가 거부될 수 있다. 수형자들은 면회전과 후에 소지금지품을 휴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체검색을 가끔 받기도 한다.<sup>24)</sup>

수형자가 보낼 수 있는 서신의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체로 서신에 대한 검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수형자가 그의 변호인이나 행정관청에 보내는 우편물, 혹은 그들로부터 온 우편물은, 그 우편물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될 수 없다. 수형자에게 온 우편물에 대해서는 마약 기타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보안상의 고려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수경비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온 우편물은 탈주방지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그 수형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할 수 있다.

전화통화는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다. 모든 지방교도소와 개방교도소에서는 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다. 보안상의 고려에서, 그리고 수형자의 사회적 적응을 위태롭게 하거나 수형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전화통화는 금지될 수 있다. 보안상의 고려에서 전화통화를 교도소 측이 도청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도청사실을 사전에 수형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통화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없다.

#### 휴가와 레저활동

스웨덴은 수형자들을 일정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나뉜다. 스웨덴에서 현재 수형자의 첫번째 휴가는 형기의 1/4이 경과한 후에 인정되며, 장기형을 선고받은 자도 최소한 2년이 경과된 후에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방교도소에서 지내는 수형자들은 이러한 기간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 여부

박탈에 그쳐야 하며, 가족생활과 성적 자유를 박탈하는 등의 부가적인 고통을 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이러한 감독관부재 면회는 도움이 된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변태적 행태, 가령 교도소내에서 동성간의 강제적 성접촉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4) 여러 선진국에서 배우자 면회제도(conjugal visits)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부부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까닭에 독신자 및 미혼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에 반해 스웨덴의 감독관부재 면회제도는 부부는 물론 친지, 아동, 친구, 애인에게 널리 기회가 개방되는 등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Short (1979), 45면 이하 참조.

의 평가는 각 개인마다 따로 이루어진다. 휴가는 2개월에 한번씩, 한번에 48시간 내지 72시간 주어진다. 휴가에 관련된 비용은 수형자들의 부담이다. 정기휴가 이외에 특별휴가제도도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허용될 수 있다. 휴가에는 여리가지 조건이 붙여질 수 있다. 1988년과 89년 사이의 정기휴가와 특별휴가의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총 휴가건수는 43,138건이며, 그 중에 귀소하지 않은 비율이 3.2%이며, 귀소시간을 어겼거나 음주후 귀소, 마약반입시도 등의 위반을 한 비율이 0.8%를 나타내고 있다(Bishop, 1991 : 628).

그밖에 레저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휴가가 허용되기도 한다. 스포츠와 문화활동이 장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휴가는 바람직한 것이며, 이 때 교도관들이 동행 감독하게 된다.

#### 의료적 처우

스웨덴의 교도소에서 의사가 풀타임의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자격있는 간호원은 모든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형자는 지역병원에 송치되거나 지역병원의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게 된다. 병원치료는 통상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조직과의 협력은 대단히 원활한 편이라 한다. 치과적인 진료와 치료에 있어서도 거의 어려움이 없다. 대형 국가교도소에서는 구강외과를 두고 있다.

#### 징벌과 보안을 위한 조치

교도소에서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조치로써 종래 널리 이용되었던 독거구금(solitary confinement)은 1976년에 폐지되었다. 현재 두 가지 종류의 징벌이 인정되고 있는데, 경고 및 10일 이내의 일정기간을 수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결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징벌기간은 교도소에서 지냈어도 지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그만큼 형기가 연장되는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다. 물론 '기간상실' 결정의 횟수를 제한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징벌결정은 교도소장의 권한에 속한다. 기간상실결정의 경우 소장은 중앙부서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절차 및 결정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결정은 중앙교정국의 법무실에서 다시 심사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상소될 수 있다. 그밖에 사실상 징벌적 의미로 사용되는 조치로는 다른 교도소, 특히 폐쇄교도소로의 이송, 귀휴의 연기, 외부통근(학)의 연기조치 등이 있다.

징벌로서의 독거구금은 폐지되었지만, 사유와 기간을 붙여 격리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사유로서는 예컨대 국가안보, 수형자의 신변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다른 수형자를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인 경우, 다른

수형자들에게 질서위반이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이나 약물을 배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격리처분은 10일이 경과할 때마다 재심사된다.

강제적 격리조치 이외에 자발적인 격리신청도 있다. 자발적 격리를 허용하는 결정은 적어도 월 1회 재심사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심사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형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의 검사는 필수적이다. 자발적 격리신청은 다른 수형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 주로 이용되는데, 주로 성범죄자,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자, 마약부채자 등이 많다. 최근들어 자발적 격리신청은 더욱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자발적 격리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한 사동(舍棟)도 생겨나고 있다. 강제적 격리가 인권제약적 요소가 많은 반면, 자발적 격리는 수형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료 수형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충처리와 이의신청

수형자들은 행정조건 혹은 결정사항에 대해 교도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교도소 처우법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자 신들만의 총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교도소에서는 수형자위원회(prisoners' council)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임원진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회 이외에도 수형자들은 총회를 열 수도 있다. 교도소측과의 회담에서 수형자들의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한다. 회담에서 의장은 교도소장이, 서기는 수형자의 대표 가운데 선택된다.

아울러 수형자들은 모든 스웨덴 시민과 마찬가지로 옴부즈만(Justice Ombudsman)에게 진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sup>25)</sup> 옴부즈만에게 보내는 서신은 검열 기타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옴부즈만은 수형자의 진정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교도소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Bishop, 1991 : 608)

25 옴부즈만은 스웨덴식 법치주의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제도로써, 스웨덴 법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는 일반시민의 진정을 받거나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할 경우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그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에서 존중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옴부즈만 제도는 형식성에 치우친 행정체계를 시민의 욕구에 맞추어가는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에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실시되었고, 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있다. Eyben, W.(1981), 234면 이하 참조.

## 7. 결 론

본고는 북구의 형사정책, 그 중에서도 형사제재 및 행형에서의 이론적, 실천적 노력을 살펴보자 했다. 북구의 형사정책이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것으로 국제적인 평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형벌과 교정분야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하나의 의미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제도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실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혀 이질적인 형사정책적 분위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북구의 교정의 실제에 대한 실감의 뒷받침이 없이 글을 쓴다는 것의 위험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본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북구 각국의 범죄는 1950년대 이래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간행의 공식통계에서는 물론 범죄암수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범죄별로 보면, 살인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며, 폭력범죄는 비율면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증가를 양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절도범이며, 스웨덴의 경우 총범죄 가운데 60% 가까운 비율을 절도범이 점한다. 또한 재산범죄 가운데 상당부분이 차량관련 범죄로 나타난다. 장기적 국면으로 볼 때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폭력범의 상대적 축소와 절도범의 상대적 증가로 특징지워진다. 특히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재산범의 일관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부의 증대와 복지화의 추진은 곤궁성 범죄를 일으키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범죄감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범죄증가는, 한편으로 대량소비사회에 따른 범죄기회의 증대와 소유형태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데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종래 북구에서는 알콜리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통계상으로 알콜리즘의 감소와 폭력범의 감소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0년대 이후에는 약물범죄 및 교통범죄의 증가가 보여지고, 범죄주체로서의 기업의 비중의 커져가는 추세에 있다.

범죄의 증가는 형벌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듯하나, 북구의 경우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사형은 북구 각국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자유형의 경우에도 부정기형의 폐지와 필요적 가석방제의 도입으로 형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 스웨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 때, 실질적인 구금율은 장기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이며, 평균형기도 단축되어왔다. 북구 각국의 평균구금일 수는 2 내지 5개월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구금

비율, 미결수용자의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율과 구금율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구금율은 해당 국가의 문명화의 정도 혹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형벌감소의 경향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형벌의 실질가치의 변화에서 구해질 수 있다. 생활 여건이 향상될수록 1일의 자유박탈의 실질가치가 더욱 높아지며, 재산형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유형의 빈도, 기간의 감소와 재산형의 확대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경향에 대한 설명은 단기적 경향의 분석에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최근 처벌강화의 경향도 한편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마약범죄 성폭력 경제사범 등 신종범죄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범죄에 대한 정책방침의 변화와 관련된다.

2) 70년대 이후 북구의 행형이론은 효율적이고 정의롭고 인도적인 형사정책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우선 종전까지 지배적인 행형 이데올로기였던 교정처우 내지 사회복귀사상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권 내에서 형성된 제도의 폐지가 돋보인다. 의료모델에 기반한 강제적 처우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행해졌으며, 시설 내 수용의 교정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배하게 되었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보다 전통적인 고전주의 형벌이론의 원칙을 재생하는 신고전주의의 흐름이며, 둘째는 보다 급진적인 감옥폐기론이 주창되었다. 전자는 특히 핀란드에서, 후자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북구 각국의 긴밀한 상호관계로 인해 모든 북구의 형사정책에 다소간 파급되었다. 신고전주의 형사정책에서는 예측가능성의 확보, 법앞의 평등 내지 형평의 추구, 범죄의 처벌가치 등 고전주의적 법이념을 되살려 입법과 법적용상의 합리성을 기하려 한다. 북구의 경우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형벌강화와 관련시키지 않고 대신 형벌의 도덕형성적 기능을 부각시키며, 형벌의 정당성의 요소로써 정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형벌폐지론 내지 좀계는 감옥폐지론은 특정 형사제재제도의 역사적 한시성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보다 문명화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대체로 감옥폐지론은 어떤 대안의 추구보다 폐지 자체에 중점을 두는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폐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특수수형시설의 폐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마티센에 따르면, 형벌의 문제 혹은 감옥시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신고전주의와 형벌폐지론은 일견 매우 상이한 흐름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행형문제에 대한 판단에서는 상당 부분 수렴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북구 형사정책 이론들이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노선을 견지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3) 형사제재 분야의 개선을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은 형법개정과 자유형에 대한

대안의 추구에서 잘 보여진다. 북구 각국에서는 80년대 들어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방향은 일반예방의 강조와 형사제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적 원칙을 대폭 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활발한 논의 과정에서 특수 구금시설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시설내 구금의 비효율성과 유행성에 대한 비판은 자유형의 역할감소론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자유형 감소론은 법원칙 면에서나 법집행의 면에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변형된 방법은 야간구금 및 주말구금과 같은 반구금처우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덴마크에서 특히 활발히 실험되고 있다.

자유형에 대한 전통적 대안은 조건부 자유형 및 벌금형의 확대적용, 사회봉사 명령의 도입에서 보여진다. 북구에서는 가장 먼저 일수벌금제를 창안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형의 결정에 있어서 죄질과 수입수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일수벌금제 및 벌금형의 분할납부제의 실시는 벌금의 미납자를 줄이고 따라서 대체자유형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975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북구에서는 덴마크가 가장 적극적인 편이며 스웨덴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그보다 경미한 형벌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활용하는 영국의 경우와 달리 형벌강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점이 평가될 수 있다.

자유형에 대한 최근의 혁신적 대안의 실험은 계약처우제와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서 잘 나타난다. 스웨덴에서는 1988년에 범죄자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범죄자가 지닌 마약문제와 알콜문제를 치료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계약처우제를 도입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비권력적인 국가기관의 주선과 조정하에 범죄자와 피해자가 면담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해 야기된 분쟁의 해결에 양 당사자를 주체로 참여하게 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실험으로써 주목받을 만하다. 유사한 실험은 북구의 다른 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4) 오늘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 북구의 경우에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에서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중히 대우받고 자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권리,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배상명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국가보상제도는 1988년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한 피해에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를 돋기 위해 피해자원조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분자로부터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제가 인정되어 있다. 여성의 집과 피해자위기센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에 있어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실질적 지원의 강화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5) 형사정책에 있어 북구의 평판을 가장 높이고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 교정시설의 운용과 수형자의 권리확대에서 보여지는 선진적인 교정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현재의 교정정책으로의 발전에 주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70년대 초의 감옥폭동과 감옥개혁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의 움직임은 수형자 자신의 집단적 움직임과 외부의 지원단체의 연대감 속에서, 처우의 개방화와 사회화, 그리고 수형자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의 확대가 주창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행정당국이 종래의 교정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형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수형생활에서도 구금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수형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폭넓게 인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수형자는 교도작업에 따른 실질임금을 받고 있으며, 면회는 특별한 위협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간섭없이, 충분한 시간동안 허용된다. 서신에 대한 검열은 없으며, 전화통화는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한번에 48시간 내지 72시간 주어진다. 질서위반에 대한 징벌조치로써 독거구금은 폐지되었고, 경고 및 10일이내의 기간상실결정 등이 행해진다. 수형자들은 집단적으로 자신의 결사체를 가질 수 있으며, 교도소와의 면담에서 대표를 뽑을 수 있다. 고충처리와 이의신청에 있어 정규 사법기관 이외에 옴부즈만에게 진정할 권리를 갖는다. 북구 각국은 이와 같이 인도적인 행형개혁의 모범국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행형개혁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지지에서 그 원인의 일단을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적 행형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태도가 아닐까 한다. 수형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다방면으로 추구되고 있으며, 교정분야에서 시민참여의 오랜 전통도 거기에 일조한다. 또한 사회복지가 명목적인 데 그치지 않고 공공정책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폭넓은 논의와 참여가 확보되어 있는 사회(Espingen-Andersen, 1987 :42 ; Gould, 1988 : 28)에서는, 사회의 가장 밀바닥층에 해당하는 범죄자집단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문제해결방식이 보다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북구의 형사정책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으며, 범죄문제에 대한 만능의 해결책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북구의 형사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범죄와 갈등에 대해 전쟁이 아니라 평화, 배제가 아니라 참여, 국가독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역할, 진압이 아니라 화해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형사정책은 그 사회내의 범죄 문제가 덜 심각해서가 아니라, 범죄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회와 국가가 보여

주는 문명화의 수준과 정치적 결단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처벌의 강화와 진압적 해결방식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구의 사례는 적어도 의미있는 자극제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Alestalo, M. & Kuhnle, S.
- 1987 "The Route :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in R. Erikson et al. (eds.), *The Scandinavian Model : Welfare States and Welfare Research*, Armonk : M.E.Sharpe.
- Anttila, I.
- 1983 *Neue Tendenzen der Kriminalpolitik in Scandinavien*, ZStW 95
- Anttila, I.
- 1985 "The Ideology of Crime Control in Scandinavia: Current Trends", HEUNI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Selected Issues in Criminal Justice*, Helsinki.
- Aspelin, E., Bishop, N., Thornstedt, H., & Törnudd, P.
- 1975 *Some Development in Nordic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Stockholm: Scandinavian Research Council for Criminology.
- Balbig, F.
- 1985 "Crime in Scandinavia : Trends, Explanations, and Consequences", in Bishop, N.(ed.).
- H. Bianchi et al. (eds.)
- 1986 *Abolitionism : Towards a Non-repressive Approach to Crime*, Amsterdam : Free University Press.
- Bishop, N.
- 1975 "Beware of Treatment ", in Aspelin, E. et al.(eds.).
- Bishop, N. ed
- 1985 *Scandinavian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1980-85*, Copenhagen: Scandinavian Research Council for Criminology.
- Bishop, N.
- 1988 *Non-Custodial Alternatives in Europe*, HEUNI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Helsinki.
- Bishop, N. ed
- 1990 *Scandinavian Criminal Policy & Criminology*, Stockholm: Scandinavian Research Council for Criminology.
- Bishop, N.
- 1991 "Sweden", in Smit, D. & Dinkel, F.(eds.), *Imprisonment Today and Tomorrow*, Boston : Kluwer.
- Bondeson, U.
- 1989 *Prisoners in Prison Societi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
- Bondeson, U.
- 1990 "Innovative Non-custodial Sanctions", in Bishop, N. (ed.).
- Bottoms, A. et al, eds.
- 1980 *The Coming Penal Crisis: A Criminological and Theological Exploration*, Edinburgh : Scottish Academic Press.
- Christie, N.
- 1968 "Changes in Penal Values",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2, Oslo : Universitetsforlaget.
- Christie, N.
- 1977 "Conflicts as Propert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17, no.1
- Christie, N.
- 1981 *Limits to Pain*, Oslo : Universitetsforlaget.
- Coelho, H.
- 1986 "A South European Looks at the Swedish Prison System", HEUNI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Papers on Crime Policy 2*.
- Cornils, K.
- 1985 "Landesbericht Sweden", in Eser, A. (Hrsg.), *Strafrechtsentwicklung in Europa*, Freiburg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 Cornils, K.
- 1990 "landesbericht Sweden", in Eser, A. & Huber, B.(Hrsg.), *Strafrechtsentwicklung in Europa*, Freiburg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 Council of Europe
- 1983 *Prison Management*, European committee on Crime Problems, Strasbourg.
- Council of Europe
- 1992 *Prison Information Bulletin*, June, no. 16.
- Dolmen, L. ed
- 1990 *Crime Trends in Sweden 1988*, NCCP, Stockholm : Allmänna Förlaget.

- Eser, A. (Hrsg)  
*Strafrechtsentwicklung in Europa*, Freiburg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 Eser, A. & Huber, B. (Hrsg.)  
*Strafrechtsentwicklung in Europa*, Freiburg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 Falck, S.  
1990 "Community Mediation Centers on the Right Track or Side-Tracked", in Snare, A.(ed.), *Youth, Crime and Justice*,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12, Norwegian University Press.
- Falkner, S.  
1989 "Recent Legislation in Sweden improving the Situation of Victims of Crime", Helsinki Institut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Changing Victim Policy: The United Nations Victim Declaration and Recent Development in Europe*, Helsinki.
- Eyben, W.  
1981 "Democracy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Wisti, F. et al.(eds.), *Nordic Democracy*, Copenhagen : Det Danske Selskab.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 Vintage.
- Gildmeister, G.  
1977 *Prison Labor and Convict Competition with Free Workers in Industrializing America, 1840-1890*, Ph.D. Diss., Northern Illinois Univ.
- Goldschmidt,  
1984 "Material Alternatives to Legal Resolution of Criminal Conflicts", *International Annals of Criminology* 22.
- Gould, A.  
1988 *Conflict and Control in Welfare Policy : The Swedish Experience*, London : Longman.
- Hofer, H.  
1984 *Nordic Criminal Statistics 1950-1980*, 3rd revised ed., Statistics Sweden : RS-Promemoria.
- Hofer, H.  
1991 *Criminal Statistics over Three Centuries*, Statistics Sweden RS-Promemoria.

- Jepsen, J.  
1991 "Denmark", in Smit, D. & Dünkel, F.(ed.), *Imprisonment Today and Tomorrow*, Boston : Kluwer.
- Joutsen, M.  
1985 "From Theory to Research to Policy: Scandinavian Developments in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HEUNI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Selected Issues in Criminal Justice*, Helsinki,
- Joutsen, M. & Shapland, J.  
1989 *Changing Victim Policy: The United Nations Victim Declaration and Recent Development in Europe*, HEUNI (Helsinki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 Kalmthout, A.  
1988 *Sanctions-Systems in the Member-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part I, Norwell : Kluwer.
- Lahti, R.  
1985a "Current Trends in Criminal Policy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in Bishop, N. (ed.).
- Lahti, R.  
1985b "Kriminalität, Kriminologie und Kriminalpolitik in den nordischen Wohlfahrtsstaaten", H. Kury (ed.), *Kriminologische Forschung in der Diskussion: Berichte, Standpunkte, Analysen*, Köln : Carl Heymanns Verlga KG.
- Lahti, R.  
1987 "Aktuelle Entwicklungstendenzen in der Kriminalpolitik der nordischen Länder", in Eser, A & Cornils,K.(eds.), *Neue Tendenzen der Kriminalpolitik*, Freiburg i. Br.: Max-Planck-Inst. für Ausländ. u. Internat. strafrecht.
- Lahti, R.  
1990 "Sub-Regional Criminal Policy, The Experience of the Nordic Countries", in Bishop, N.(ed.).
- Lahti, R.  
1991 "Neues in der finni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und in den allgemeinen Lehren des finnischen Strafrechts", *Zeitschrift für Strafrechtswissenschaft*, 103/2.
- Lundquist, A.  
1990 "Some Recent Developments in Swedish Criminal Policy", in Bishop, N.(ed.).

- Löfmarck, M.
- 1987 "Neo-Klassizismus in der nordischen Strafrechtlehre und-praxis: Bedeutung und Auswirkungen", in Eser, A. & Cornils, K.(eds.), *Neue Tendenzen der Kriminalpolitik*, Freiburg i. Br: Max-Planck-Inst. für Ausländ. u. Internat. strafrecht.
- Mathiesen, T.
- 1965 *The Defences of the Weak*, London : Tavistock.
- Mathiesen, T.
- 1974 *The Politics of Abolition*,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 4, Oslo : Universitetsforlaget.
- Mathiesen, T.
- 1980 *Law, Society and Political Action*, London : Academic Press.
- Mathiesen, T.
- 1986a "The Argument against Prison construction", in H. Bianchi et al. (eds.), *Abolitionism : Towards a Non-repressive Approach to Crime*, Amsterdam : Free University press.
- Mathiesen, T.
- 1986b "the Politics of Abolition", *Contemporary Crises*, vol. 10.
- Mathiesen, T. & Roine, W.
- 1975 "The Prison Movement in Scandinavia", in Bianchi, H. et al.(eds.), *Deviance and Control in Europe*, London : John Wiley & Sons.
- NCCP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 1985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Sweden*, Stockholm : Allmänna Förlaget.
- NCCP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 1990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Sweden*, Stockholm : Allmänna Förlaget.
- Nordic Statistical Secretariat
- 1992 *Yearbook of Nordic Statistics*, Nordic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Nordic Statistical Secretariat.
- Scheerer, S.
- 1986 "Towards Abolitionism", *Contemporary Crises* 10.
- Short, R.
- 1979 *The Care of Long-Term Prisoners*, London : Macmillan.